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26.] [환경부령 제1120호, 2024. 9. 26., 타법개정]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044-201-6671, 66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본조신설 2012. 8. 3.]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 8. 18.]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8. 18.>

1. 측정범위나 최소눈금 간격
2. 측정방법·측정원리나 측정항목
3. 측정기기의 기능이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이나 내부구조
4.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 8. 3., 2022. 8. 18.>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과 변경승인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8. 3., 2022. 8. 18.>

②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성능시험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9. 12. 20., 2022. 8. 18.>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가. 주요 제원(諸元: 기계류의 치수나 무게 등의 성능과 특성을 나타낸 수적 지표)에 관한 서류
 - 나.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 다. 성능시험성적서
 - 라.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이하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라 한다)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 다. 성능시험성적서
- 라.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인이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요청한 측정기기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 3. 2., 2012. 8. 3., 2022. 8. 18.>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법 제10조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2. 8. 18.>

1. 측정기기의 명칭·제작사 및 형식
2. 형식승인번호
3. 형식승인 연월일
- 3의2. 형식승인 취소연월일(형식승인을 취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형식승인서를 잃어버리거나 형식승인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형식승인서를 다시 내주어야 한다.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기기와 같은 형식의 측정기기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입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2019. 12. 20., 2022. 8. 18.>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입신고수리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③ 수입신고수리서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예비형식승인 신청서에 신제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비공개접속경로점검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제품의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시험 수수료를 포함한다)을 마련하여 신청인과 검사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예비형식승인기준과 예비성능시험방법을 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8. 18.>

1.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와 비교하여 시험·검사 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가 개선된 것일 것
2. 환경오염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환경기준 달성 여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일 것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검사기관에 해당 신제품의 예비성능시험을 의뢰해야 한다.<개정 2022. 8. 18.>

- ④ 제3항에 따라 예비성능시험을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예비성능시험을 실시한 후 신청인에게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 8. 18.>
- ⑤ 제4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2. 8. 18.>
- ⑥ 제5항에 따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해당 신제품이 예비형식승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신설 2022. 8. 1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형식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2. 8. 18.>
[본조신설 2012. 8. 3.]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검사기관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국제공인기구로부터 발급받은 인정서 보유 여부
 - 2. 제2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구조·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과 성능시험능력 보유 여부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 [본조신설 2012. 8. 3.]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판매 시 준수사항) ①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이하 "제작자등"이라 한다)은 예비형식승인제품에 대하여 별표 2의2의 예비형식승인표를 부착한 후 유통·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형식승인표 부착이 불가능한 측정기기인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예비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으로서 다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라는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 ② 제작자등은 구매자가 날인 또는 서명한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예비형식승인표 발급대장을 작성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법 제9조의3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측정기기(이하 "간이측정기"라 한다)를 말한다.

-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 2.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 3.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 4.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 5.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간이측정기

[본조신설 2022. 8. 18.]

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6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2의3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을 판정하여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별표 2의4에 따른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일 수 있다.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 알리고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방법·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 1. 공개하려는 측정 결과가 간이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는 사실
- 2. 측정에 사용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등급

[본조신설 2022. 8. 18.]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의 기간(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주기는 해당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개정 2009. 7. 13., 2012. 8. 3., 2022. 8. 1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정도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2. 8. 18.>

-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 2. 감염병의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제때 정도검사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2. 8. 18.>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3., 2022. 8. 18.>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개정 2012. 8. 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 2.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검정을 받아야 하는 교정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매연측정기는 제외한다)의 교정(校正)을 위한 기체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가스"라 한다) 또는 액체 형태의 표준물질(이하 "측정기기 교정액"이라 한다)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표준필터와 매연포집용 여과지
- ② 제1항에 따른 교정용품은 형식승인 대상기기와 정도검사 대상기기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고 판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정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용품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정 성적서에 적고, 교정용품이 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정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 8. 3.>
 1. 측정기기 교정가스 또는 측정기기 교정액 :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 및 표준필터 : 5일
 3.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 20일
- ⑤ 검정의 유효기간, 검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7. 17.>

-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12. 8. 3.>
- ③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13., 2012. 8. 3.>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별표 7의 평가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하여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줘야 한다.<개정 2009. 7. 13., 2012. 8. 3., 2022. 8. 18.>
-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1. 검사기관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지정 번호
 3. 지정 연월일
 4. 검사대행 분야 및 대상기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2. 8. 3.]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① 검사기관이 영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의 변경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고,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5일(검사 분야 또는 대상기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2. 8. 3., 2019. 12. 20.>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제목개정 2012. 8. 3.]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2020. 7. 16., 2022. 8. 18.>

[제목개정 2012. 8. 3.]

제3장 시험·검사기관 등 <개정 2012. 8. 3.>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22. 8. 18.>

② 영 제1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란 국공립 연구기관, 대학부설 연구기관 등과 장비사용계약을 체결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실내공기질 및 악취 분야의 실험기기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2. 8. 18.>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2. 8. 3., 2017. 7. 17., 2018. 12. 13.>

1. 기술능력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영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현장평가를 받은 후 적합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2. 8. 3., 2017. 7. 17.>

⑤ 제4항에 따른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7. 17.>

1.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8. 3., 2017. 7. 17.>

⑦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고,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거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7. 7. 17., 2018. 12. 13.>

⑧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 8. 3., 2017. 7. 17., 2018. 12. 13., 2022. 8. 18.>

1. 측정대행업자의 상호·대표자·소재지
2. 등록번호

3. 등록연월일
4. 측정대행항목
5.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정대행업자가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3., 2017. 7. 17., 2018. 12. 13.>

1. 측정대행업 등록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소음·진동 분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 전단”은 “제15조제1항”으로,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는 “측정대행업 변경등록신청서”로 본다.<신설 2017. 7. 17.>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정대행업 등록대장과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 7. 17., 2018. 12. 13.>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에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측정대행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2. 8. 18.>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2. 8. 18.>
[본조신설 2018. 12. 13.]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① 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 7일 전까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계획서
 - 가. 측정대행업무의 대상 및 범위
 - 나. 측정대행계약 시 준수사항
2.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산출내역서 등 가격결정과 관련된 서류는 제외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2. 8. 18.>

[본조신설 2020. 9. 29.]

[제목개정 2022. 8. 18.]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9호의4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3조의3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란 별지 제19호의5서식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9. 29.]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의 처분사항란에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2018. 12. 13.>
- ③ 측정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와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는다.<개정 2009. 7. 13., 2018. 12. 13., 2022. 8. 18.>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증을 회수하고, 측정대행업 등록대장에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을 적고 등록사항 변경란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개정 2018. 12. 13.>
- ⑤ 법 제17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제14조제8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 8. 3., 2017. 7. 17.>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①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20. 7. 16.>

- ② 법 제18조제3항에서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1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개정 2022. 8. 18.>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한다)를 위한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도관리심의회를 둘 수 있고,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기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하고, 별표 11의2의 판정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 기관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도관리 검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한다.

- ② 정도관리 검증서를 발급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숙련도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존에 발급받은 정도관리 검증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관리 실시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2. 8. 3.]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① 법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다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정도관리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정도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적합 판정을 통보받은 사유가 시설 또는 장비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을 완료한 즉시 신청할 수 있다.
- ③ 법 제18조의2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란 별표 11의3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신설 2020. 7. 16.>

[본조신설 2012. 8. 3.]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 1. 19., 2018. 1. 17., 2020. 4. 2., 2020. 9. 29., 2022. 7. 12., 2023. 12. 29.>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시·도의 환경보전계획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
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8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4.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0호에 따른 환경기초조사사업 보고서
6.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7.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
8.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3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같은 법 제4조의4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9.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10. 「환경보건법」 제6조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보고서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보고서와 국민환경보건 정밀조사 보고서
11. 「먹는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수도기본계획,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른 수도물품질보고서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수도시설 기술진단 보고서
13. 「하수도법」 제4조에 따른 국가하수도종합계획, 같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유역하수도정비계획,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 첨부하는 도서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보고서
14.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0조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
1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1조에 따른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본조신설 2014. 1. 17.]

제17조의6(시험·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8. 18.>

1. 해당 분야의 환경측정분석사
2.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검정의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기술능력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별로 지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4. 1. 17.]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8. 18.]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 신청자가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정을 시행하려면 검정분야·시험과목·시험방법·합격기준·시험일시 및 시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 90일 전까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말까지 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2014. 12. 29.>

③ 검정의 필기시험(이하 "필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검정의 실기시험(이하 "실기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검정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29.>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신설 2024.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제30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검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정한다.<개정 2024. 9. 26.>

[시행일: 2025. 1. 1.]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반환에 관련된 부분

제19조(시험위원) ① 영 제15조제9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장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검정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이하 "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을 전산으로 채점하는 경우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1. 환경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환경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3.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환경측정분석사
4. 환경분야의 기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환경분야의 산업기사 및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환경측정분석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은 검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검정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험위원을 해촉하거나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정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검정기관의 장은 검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해당 검정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13.>

②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기준 및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7. 13.]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13.]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검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3.>

② 검정기관의 장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에 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가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외에는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검정기관의 장은 즉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 12. 29.>

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자격증을 검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 8. 18.>

1.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교육과정 편성과 교수요원 확보능력
3. 강의실, 실습시설 및 설비 구비능력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및 재정운영계획서
2.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3.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2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정기관 지정서를 내주고, 그 사실을 관보나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정기관 운영을 위한 인적·재정적 능력
2. 검정과정 편성과 검정요원 확보능력
3. 검정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구비능력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대기환경측정분석사 과정과 수질 환경측정분석사 과정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에는 정도관리와 해당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기기 분석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②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기술인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 6. 30., 2017. 7. 17., 2020. 9. 29.>

1. 해당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최초로 고용된 사람
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은 측정분석 기술요원과정으로 하며, 교육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와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목표, 과목, 기간 및 인원
5. 교재편찬계획
6.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7.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교육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계획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 12. 13.>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파악하여 그 명단을 교육을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와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8. 12. 13.,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교육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의 장은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마쳤는지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 사항과 교육시기 등을 항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8. 12. 13., 2020. 9. 29.>

제29조(사후 관리) 법 제28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장소에 조사·질문하거나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1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0조(수수료) ① 법 제30조제1항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3과 같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 2017. 7. 17., 2022. 8. 18.>

②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개정 2017. 7. 17.>

1.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등록 : 1만원
2.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측정대행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 수수료를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

1. 필기시험: 3만3천원
2. 실기시험: 15만원

④ 제3항에 따라 응시 수수료를 수납하는 검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응시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⑤ 법 제3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교육 및 전문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은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교육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8. 3., 2024. 9. 26.>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등의 지원이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수수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 9.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수수료를 수납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2. 8. 3., 2024. 9. 2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시험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시험 시행일의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시험일이 진찰·치료·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7.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 가. 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 나.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 다.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라.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마. 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시행일: 2025. 1. 1.]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반환에 관련된 부분

제31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 7. 16.>

1. 제5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정도검사의 기준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3.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도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정도검사 증명서 발급기한: 2014년 1월 1일
4. 제10조제2항 및 별표 6에 따른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14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의 세부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의4제3항 및 별표 11의3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2020년 1월 1일
7. 삭제 <2023. 4. 17.>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제1120호,2024. 9. 26.>(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등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반환에 관련된 부분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제30조제4항 및 제7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제4항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부터 적용한다.

②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작하는 환경측정분석사 교육 및 측정대행업무 담당 기술인력 전문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제1조의2 관련)

1. 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기준은 다음과 같이 인력, 시설, 장비, 운영관리를 포함한다.

가. 인력기준은 시험과 검사 분야로 나누며, 다음의 자격 요건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책임자 : 시험분야 1인, 검사분야 1인 총 2인 이상

가)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연구원 : 시험분야 10인 이상, 검사분야 20인 이상

가) 환경측정분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나) 관련분야의 기사 또는 석사로서 시험·검사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관련분야의 기능사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나.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다음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험·검사실 : 시험실(3실 이상), 검사실(3실 이상), 기기분석실(1실 이상), 크린룸(10,000 class 이하), 천칭실(1실 이상), 시험·검사품 보관실(1실 이상)

2) 장비는 시험과 검사 분야로 각각 나누어 구비할 수 있다.

가) 시험분야 : 고분해능기체크로마토그래프/고분해능질량분석계(HRGC/HRMS), 유도결합플라즈마분석기ICP, 원자흡광분광광도계(A.A), 기체크로마토그래프(GC), 정밀저울 각 1조 이상(동등 이상 성능의 장비 인정)

나) 검사분야 :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형식승인대상 측정기기 각 1조 이상

다. 운영관리 : 시험·검사 결과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인력 기준의 관련분야, 시험검사실의 면적, 분야별 대상장비, 정도관리 등 기준시험·검사실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제2조 관련)

1. 자동차 분야

구분	구성요소
<p>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p> <p>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p> <p>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p> <p>3)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p> <p>4)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p> <p>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p>	<p>동력흡수장치, 부하측정장치, 공기유량측정장치, 연료유량측정장치 및 교정장치</p> <p>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롤러장치, 주행거리측정장치, 운전모드 보조장치, 송풍장치, 안전장치 및 교정장치</p> <p>시료채취장치, 기록장치, 교정장치, 이산화질소 전환장치(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배기가스분석기</p> <p>밀폐실, 분석기, 기록장치, 환기용 및 혼합용 송풍기 및 연료탱크가열장치</p> <p>배출가스희석터널, 채취부, 무게측정부 및 입자계수부</p> <p>시료채취장치, 배기가스유량계, 교정장치, 배기가스분석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온도 및 압력 측정부, 엔진제어데이터 수집장치 및 기록장치</p>
<p>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p> <p>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p> <p>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p>	<p>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구동장치, 롤러장치, 엔진회전수 및 차량속도 측정장치, 구동출력측정장치, 운전모드보조장치, 안전장치, 냉각용 송풍기 및 엔진오일온도측정장치(대형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시료채취장치, 기록장치, 교정장치, 배기가스유량측정장치(IM240 배기가스유량직접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p>

<p>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3)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만 해당한다)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4)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5)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기기</p> <p>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해당한다) 및 배기가스분석장치 배출가스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및 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p> <p>배출가스채취부, 광원부(光源部), 수광부(受光部), 농도지시부 및 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부분유량채취광투과식 매연측정기인 경우만 해당한다)</p> <p>녹화·재생용 렌즈, 필터교환장치, 흑백상태자동조절장치, 감도선택장치, 조리개자동조절장치, 데이프구동장치(메모리카드를 포함한다), 헤드기구장치, 오동작방지장치, 입·출력단자장치 및 마이크부착장치</p> <p>광원감지기(SDM: Source Detector Module), 반사거울(CCM: Corner Cubic Mirror),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주제어장치, 카메라, 교정장치 및 이동차량(비교정형 측정기인 경우만 해당한다)</p>
---	---

2. 대기 분야

구분	구성요소
가.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
나.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및 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
다.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유속감지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
라.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PM-10) 및 초미세먼지(PM-2.5)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

<p>마.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p> <p>1) 굴뚝 입자상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p> <p>2) 굴뚝 가스상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p>	<p>흡인노즐, 흡인관, 피토관(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여과지홀더, 여과부가 열장치(굴뚝 외부에 여과지홀더가 위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임핀저(impinger)트레인(수분흡수용), 가스흡인장치 및 유량측정부</p> <p>시료채취관, 임핀저트레인(가스흡수용), 가스흡인펌프 및 유량측정부</p>
<p>바.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p>	<p>시료흡인부, 입경분립부, 여과지홀더, 유량측정부, 온도 및 압력 측정부, 흡인펌프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p>

3. 수질 분야

구분	구성요소
<p>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센서부, 전극, 전극보호구, 변환기, 세정장치,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p>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계량부, 반응부, 가열부, 적정부, 교반부, 검출부, 변환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p>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p>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p>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p>바.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시료도입부, 무기탄소제거부, 반응검출부, 운반기체공급부, 주입부, 산화반응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p>사.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센서부, 전극,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p>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p>	<p>검출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p>

4. 소음·진동 분야

구분	구성요소
가. 소음계(소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및 방풍망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방풍망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
다.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분석부, 출력단자 및 지시계

5. 토양 분야

구분	구성요소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1)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누출측정기, 탐침(probe)봉, 온도계 및 데이터분석장치
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압력계, 온도계, 가압장치, 감압장치 및 안전장치
3)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	누출측정기, 탐침봉, 온도계 및 데이터분석장치

6. 먹는물 분야

구분	구성요소
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지시·외부 출력장치 및 검출장치
나.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지시·외부 출력장치 및 검출장치

7. 실내공기질 분야

구분	구성요소
가.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흡인펌프 및 유량계
나.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22. 8. 18.>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 (제4조 관련)

형식승인표(수입신고표)

제 작 회 사 :	기 기 형 식 :
형식승인번호 :	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비고 :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mm×세로 40mm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원동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용원동기를 시험운전 모드로 운전하여 제어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부하측정장치, 공기유량측정장치, 연료유량측정장치 및 교정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시험용원동기의 모든 속도에서 부여되는 부하와 원동기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롤러장치, 주행거리측정장치, 운전모드보조장치, 송풍장치, 안전장치 및 고정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장치, 교정장치, 이산화질소 전환장치(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배기가스분석기를 갖추어야 하며, 원동기동력계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메탄,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를 채취하여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수소염이온화법(Hydrogen Flame Ionization Detector)에 따른 탄화수소 분석기로, 밀폐실 내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밀폐실, 분석기, 기록장치, 환기용 및 혼합용 송풍기 및 연료탱크가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밀폐실 내의 탄화수소농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한 측정범위를 가지고 증발가스 분석기에서 나오는 출력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희석터널, 채취부, 무게측정부 및 입자계수부를 갖추어야 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 또는 입자개수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배기가스유량계, 교정장치, 배기가스분석기, 위성위치확인시스템, 온도 및 압력 측정부, 엔진제어데이터 수집장치 및 기록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및 이산화탄소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측정하기 위해 도로에서의 자동차 주행상태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동력흡수장치, 관성중량부여장치, 구동장치, 물러장치, 엔진회전수 및 차량속도 측정장치, 구동출력측정장치, 운전모드보조장치, 안전장치, 냉각용 송풍기 및 엔진오일온도측정장치(대형운행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춰야 하며, 시험주행모드로 운전할 때 도로부하력 등을 부여하고 제어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장치, 기록장치, 교정장치, 배기가스유량측정장치(IM240 배기유량 직접측정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배기가스분석장치를 갖춰야 하며, 원동기 또는 차대동력계의 배출가스에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산소 및 공기과잉률을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 공기과잉률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는 배출가스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및 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를 갖춰야 하며, 휘발유 및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를 비분산형적외선 방법으로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공기과잉률 측정기는 배출가스채취부, 분석부, 농도지시부, 교정장치, 엔진회전속도측정장치를 갖춰야 하며, 휘발유, 가스 및 알코올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이산화탄소 및 산소 등을 비분산형적외선방법(산소는 자기식 및 전기화학식방법)으로 측정하여 공기과잉률을 계산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광원부, 수광부, 농도지시부 및 엔진회전속도 측정장치(부분유량채취광투과식 매연측정기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춰야 하고,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매연농도를 광반사식방법 또는 부분유량채취식·광투과식방법으로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5)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녹화·재생용 렌즈, 필터교환장치, 흑백상태자동조절장치, 감도선택장치, 조리개자동조절장치, 테이프구동장치(메모리카드를 포함한다), 헤드기구장치, 오동작방지장치, 입·출력 단자장치 및 마이크 부착장치를 갖춰야 하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배출하는 매연을 녹화·재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광원감지기, 반사거울, 속도 및 가속도 측정기, 주제어장치, 카메라, 교정 장치 및 이동차량(비고정형 측정기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갖춰야 하며, 자동차의 배출가스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및 매연을 운행 중인 자동차와 접촉하지 않고 원격으로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2. 대기 분야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를 측정·분석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배출가스채취부, 전처리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굴뚝배출가스 중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및 먼지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유속감지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굴뚝배출가스의 유속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외부 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대기 중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마.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1) 굴뚝 입자상시료 채취장치는 흡인노즐, 흡인관, 피토관, 여과지홀더, 여과부가열장치(굴뚝 외부에 여과지홀더가 위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임핀저트레인(수분흡수용), 가스흡인장치 및 유량측정부를 갖추고, 배출가스 중 입자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하며, 자동식 시료채취장치인 경우에는 등속흡인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그 결과를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2) 굴뚝 가스상시료 채취장치는 시료채취관, 임핀저트레인(가스흡수용), 가스흡인펌프 및 유량측정부를 갖춰야 하며, 배출가스 중 가스상물질을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바.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시료흡인부, 입경분립부, 여과지홀더, 유량측정부, 온도 및 압력 측정부, 흡인펌프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를 갖춰야 하며,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초미세

면지를 채취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3. 수질 분야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센서부, 전극, 전극보호구, 변환기, 세정장치,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용존산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가열부, 적정부, 교반부, 검출부, 변환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라.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총질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마. 총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계량부, 반응부, 검출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총인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바.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도입부, 무기탄소제거부, 반응 검출부, 운반기체 공급부, 주입부, 산화반응부, 시약저장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총유기탄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사.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센서부, 전극, 제어부 및 지시·외부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수소이온농도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검출부, 제어부 및 지시·외부 출력부를 갖춰야 하며, 공장·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하수, 폐수 및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물의 부유물질을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전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4. 소음·진동 분야

가.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및 방풍망을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마이크로폰, 분석부, 출력단자, 지시계, 방풍망 및 옥외용 외부보호구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진동픽업, 분석부, 출력단자 및 지시계를 갖춰야 하고, 데시벨(dB) 단위로 지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5. 토양분야

가.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누출측정기, 탐침봉, 온도계 및 데이터분석장치를 갖춰야 하고, 지하매설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관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압력계, 온도계, 가압장치, 감압장치 및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며, 지하매설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관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다.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누출측정기, 탐침봉, 온도계 및 데이터분석장치를 갖춰야 하고, 지상저장시설의 누출량을 측정하여 액량변화를 관측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6. 먹는물 분야

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지시·외부 출력장치 및 검출장치를 갖춰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여과수 및 정수 등의 탁도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지시·외부 출력장치 및 검출장치를 갖춰야 하고, 정수장으로 유입되는 원수, 정수 및 배수지수 등의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자동측정하여 원격자동

감시체계 등에 송출하기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7. 실내공기질 분야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흡인펌프 및 유량계를 갖춰야 하며, 실내공기 중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를 용이하게 포집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시료채취부, 분석부, 지시·외부출력부 및 교정부를 갖춰야 하며, 실내공기 중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및 라돈의 농도를 자동측정하는데 적합한 구조와 성능을 가져야 한다.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예비형식승인표 (제6조의4제1항 관련)

제 작 회 사 : 기 기 형 식 :

예비형식승인번호 : 예비형식승인일 :

기기고유번호 : 수입신고일 :

※ 본 환경측정기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입니다.

비고

1. 표지의 재질은 알루미늄판 등으로 하며, 크기는 가로 90mm×세로 40mm로 한다. 다만, 소음계의 예비형식승인표는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글자의 표기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인쇄 또는 각인(刻印)으로 한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기준(제6조의6제2항 관련)

1.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10.00 %	≤ 15.00 %	≤ 30 %
등급 외	> 10.00 %	> 15.00 %	> 30 %

2. 수질 분야 간이측정기

가. 용존산소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온도보상(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5.0%	≤ 5.0%	≤ 20 %
등급 외	> 5.0%	> 5.0%	> 20 %

나.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0.2 pH	≤ 0.2 pH	≤ 20 %
등급 외	> 0.2 pH	> 0.2 pH	> 20 %

3. 소음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표준입사각응답(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1.0 dB	소음 간이측정기 표준입사각응답	≤ 15.0 %
등급 외	> 1.0 dB	기준표 참조	> 15.0 %

※ 소음 간이측정기 표준입사각응답 기준표

공칭주파수(Hz)	표준입사각응답 허용오차	
	1등급	등급 외
31.5	≤ ±4.0	> ±4.0
63	≤ ±3.0	> ±3.0
125	≤ ±2.5	> ±2.5
250	≤ ±2.3	> ±2.3
500	≤ ±2.3	> ±2.3
1,000	≤ ±2.0	> ±2.0
2,000	≤ ±3.0	> ±3.0
4,000	≤ ±4.0	> ±4.0
8,000	≤ ±7.0	> ±7.0

4. 먹는물 분야 간이측정기

가. 탁도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10.0 %	≤ 10.0%	≤ 20 %
등급 외	> 10.0 %	> 10.0%	> 20 %

나. 잔류염소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10.0 %	≤ 10.0 %	≤ 20 %
등급 외	> 10.0 %	> 10.0 %	> 20 %

5. 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

가. 이산화탄소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직선성(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10.0 %	≤ 15.0 %	≤ 30 %
등급 외	> 10.0 %	> 15.0 %	> 30 %

나. 라돈 간이측정기

평가항목별 등급	평가항목		
	반복성(실내)	지시오차(실내)	상대정확도(실외)
1등급	≤ 20 %	≤ 20 %	≤ 30 %
등급 외	> 20 %	> 20 %	> 30 %

비고

1. 평가항목 중 어느 하나의 항목이 등급 외 판정을 받은 경우 성능인증 등급은 등급 외로 한다.
2. 실내시험은 향온·향습이 유지되는 실험실 등 외부 환경영향이 철저히 통제된 장소에서 실시되는 시험을 말한다.
3. 실내시험 항목 중 등급 외로 판정된 항목이 있는 경우 실외시험을 하지 않고 성능인증 등급을 등급 외로 판정할 수 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제6조의6제3항 관련)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급 표지에는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표시되어야 한다.

가. 제품명/최초 제조일자

나. 측정 분야/항목(예시: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다. 성능인증 등급/성능인증 번호/성능인증 일자

라. 해당 측정기기에 대해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성능인증서를 발급한 검사기관명

2. 성능인증 등급 표지 도안은 아래와 같으며, 표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측정분야/항목)	제품명/최초 제조일자 :
	성능인증 번호/성능인증 일자 :
(성능인증 등급)	검사기관명 :

비고

1. 성능인증 등급 표지의 재질은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2. 성능인증 등급 표지에 표기되는 글자는 지워지지 않도록 인쇄 또는 각인한다.

정도검사의 방법(제8조제2항 관련)

1. 정도검사는 의뢰자가 직접 해당 측정기기를 제출한 경우 외에는 측정기기가 설치된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한다.
2. 정도검사는 구조 확인과 성능 확인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검사 결과는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기록하며, 측정기기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는 그 결과값을 검사결과 옆에 숫자로 표시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검사의 세부 기준 및 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교정용품의 기준 (제9조제2항 관련)

1. 측정기기 교정가스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정확도를 가져야 하며,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그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 1 퍼센트
 -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치에 사용하는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 2 퍼센트
 - 다. 그 밖의 교정가스 : 표시농도의 ± 2 퍼센트
2. 자동차분야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표준필터는 매연농도값의 ± 2 퍼센트 이내의 정확도를 가져야 한다.
3. 자동차분야의 매연포집용 여과지는 KS R 1033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교정용품의 세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제10조제1항 관련)

측정기기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 \sim 40^{\circ}\text{C}$ 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text{m} \times 1.5\text{m} \times 1.5\text{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풍동시험장치(안지름이 100m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검정용 자동차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기	유량교정장치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및 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	가. 역전류검출기(osilloscope) 나. 증류수제조장치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대기질시료 채취장치	증류수제조장치
굴뚝시료 채취장치	가. 압력펌프 나. 전압·전류 측정기(전압은 0.01mV, 전류는 0.001mA 이하까지 측정 가능해야 한다)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text{V}$ 범위의 전압을 0.5 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text{M}\Omega$ 및 $500\text{M}\Omega$ 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다. 회로시험기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text{V}$ 범위의 전압을 0.5 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text{M}\Omega$ 및 $500\text{M}\Omega$ 으로 바꿀 수 있는 것) 다. 회로시험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가. 직류전압발생장치($\pm 1\text{V}$ 범위의 전압을 0.5 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p>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p> <p>다. 회로시험기</p>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p>가.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5 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p> <p>다. 회로시험기</p>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p>가.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5 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p> <p>다. 회로시험기</p>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p>가.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5 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p> <p>나.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는 것)</p> <p>다. 회로시험기</p>
소음계	<p>가.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31.5 Hz ~ 16kHz)</p> <p>나. 기록장치</p>
진동레벨계	<p>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 Hz ~ 90Hz)</p> <p>나. 기록장치</p>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자동기록장치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직류전압 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001 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0.001mV 이내 정도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	<p>가. 위상차현미경</p> <p>나. 세균 배양기</p>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	<p>가.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p> <p>나.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p> <p>다. 직류전압 공급장치</p>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세부기준(제10조제2항 관련)

1.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가. 대기 분야(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및 오존) 간이측정기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시험체임버 1대 나)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오존교정기 1대
나. 수질 분야(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간이측정기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용존산소·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항온수조(10~50℃ 범위의 온도를 $\pm 1^\circ\text{C}$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라) 증류수제조장치 1대 마) 항온항습실[온도 $(23\pm 1)^\circ\text{C}$,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소음 분야 간이측정기	기술직 2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 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31.5Hz~16kHz) 1대 다) 표준음발생기[(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1) 200~500Hz 1대 (2) 1,000Hz 1대 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마) 음 발생기: 50~8,000Hz 범

		<p>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기기 1대</p> <p>바) 음주파수 응답분석기: 50 ~ 8,000Hz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p> <p>사) 무향실[125Hz ~ 8kHz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 1 데시벨(dB) 이내여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 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 ~ 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1대</p>
<p>라. 먹는물 분야(탁도 및 잔류염소) 간이 측정기</p>	<p>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가) 탁도·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p> <p>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다) 증류수제조장치 1대</p> <p>라) 항온항습실[온도 (23 ± 1)$^{\circ}\text{C}$,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p>
<p>마. 실내공기질 분야(이산화탄소 및 라돈) 간이측정기</p>	<p>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가) 라돈용 및 라돈 외 항목용 시험체임버 각 1대</p> <p>나)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준장비) 이산화탄소용 및 라돈용 각 1대</p> <p>다) 측정기기 교정가스(이산화탄소) 1대</p> <p>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이산화탄소) 1대</p> <p>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p> <p>바) 전자저울(0.0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사) 시험가스 공급 및 농도조절장치 1대</p>

2. 정도검사 업무

가. 자동차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대 나)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다) 전압·전류 측정기 3대 라) 자동기록장치 2대 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전압변환기 3대 사) 흡입량 측정장치 3대 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대 자) 절연저항시험기 2대 차)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40℃ 범위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카) 회전수측정기(tachometer) 1대 타) 광학측정기 1대 파) 건식가스미터(적산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1대 하) 기체유량 교정장치 1대 거) 차압계(정확도 ±0.25%) 2대 너) 압력펌프(압력변환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대 더) 기준압력계(manometer) 1대 러) 풍동시험장치(안지름이 100mm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머) 기준피토포관(계수 0.95~1.00) 1대 버) 기준온도계 1대 서) 순간유량계(정확도 ±0.25%,

		<p>유량에 따라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1대</p> <p>어) 전자저울 2대</p> <p>저) 입자개수검증장치(입자분류장치, 입자전위차계, 입자개수측정기) 각 1대</p> <p>처) 유량측정시스템(정확도 $\pm 2\%$ 이내) 1대</p> <p>커) 가스디바이더(정확도 $\pm 0.5\%$) 1대 이상(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대</p> <p>나)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p> <p>다) 전압·전류 측정기 3대</p> <p>라) 자동기록장치 2대</p> <p>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바) 전압변환기 3대</p> <p>사) 흡입량 측정장치 3대</p> <p>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대</p> <p>자) 검정용 자동차 1대</p> <p>차) 절연저항시험기 2대</p> <p>카)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 \sim 40^{\circ}\text{C}$ 범위에서 온도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text{m} \times 1.5\text{m} \times 1.5\text{m}$ 이상이어야 한다) 1대</p> <p>타) 회전수측정기 1대</p> <p>파) 광학측정기 1대</p>

나. 대기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p>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산소만 해당한다) 측정기</p>	<p>수 있다)</p>	<p>나)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마)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바) 자동기록장치 3대 사) 수소이온농도계(pH계), 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아) 유량교정장치 1대</p>
<p>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메탄, 산소 및 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p>	<p>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p>가)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 발생장치 1대 나) 자동기록계 3대 다)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라) 역전류검출기 1대 마) 표준가스정화장치 1대 바) 입자계수기 1대 사) 표준전류·전압 공급장치(직류·교류) 각 1대 아) 반사율측정기 1대 자) 표준습식가스 유량계 1대 차) 수소이온농도계(pH계) 및 전도계 각 1대 카) 전자저울 2대 타) 자외선·가시광선분광광도계 1대 파)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하) 굴뚝배출가스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거) 굴뚝배출가스 유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너) 습식분석 장비·장치를 보유한 실험분석실 더)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1대 러) 증류수제조장치 1대 머)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1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 배출가스 유량측정기 교정시스템(시험단면 30cm×30cm 이상, 최대유속 15m/s 이상이어야 한다) 1대
<p>3) 대기(이산화황,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 연속자동측정기 및 대기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만 해당한다)시료 채취장치</p>	<p>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대기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대기질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별 각 1대 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마)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바)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사) 자동기록장치 3대 아) 오존교정기 1대 자) 대용량 공기채취기, 입자계수기, 베타선(β-Ray)검출기, 주파수인가장치 및 연속가변저항기 각 1대 차) 증류수제조장치 1대 카) 수소이온농도계(pH계)·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타) 전자저울 1대 파) 표준입자 발생장치 1대 하) 유량교정장치 1대 거) 가변저항기 1대
<p>4) 굴뚝시료 채취장치</p>	<p>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기체유량측정시스템(직관부가 확보되어 있고, 시스템정확도는 0.3% 이내여야 한다) 1대 나) 유량계교정장치 1대 다) 기준유량계 2대 라) 디지털압력계 2대 마) 압력펌프 1대 바) 기압계 1대 사) 전압·전류 측정기(전압은 0.01mV, 전류는 0.001mA 이하까지 측정 가능해야 한다) 1대

	<p>아) 초시계(0.01초 이하 단위까지 측정 가능해야 한다) 1대</p> <p>자)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p> <p>차) 풍동장치(피토관 시험용) 1대</p> <p>카) 온도계(최소 눈금이 0.1℃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p> <p>타) 미세눈금자(micrometer, 최소 눈금이 2μm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p> <p>파) 온도교정장치 1대</p> <p>하) 절연저항계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p> <p>거) 가변저항기 1대</p> <p>너)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시료) 채취장치(기준장비) 1대</p> <p>더) 기준피토관(계수 0.95 ~ 1.00) 1대</p> <p>러) 항온항습실[온도 (23\pm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p>
--	--

다. 수질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용존산소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p> <p>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다) 기준온도계(0 ~ 5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라) 직류전압발생장치(\pm1V 범위의 전압을 0.5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마)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인 것으로 0 ~ 1V 범위의 전압을 \pm1mV 이내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바) 항온수조(10 ~ 100℃ 범위의 온도를 \pm1℃ 이내로 일정하게</p>

		<p>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사)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pm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아) 절연저항검사장치(1kV 이상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자) 내전압검사장치(1kV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차)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카) 신호기록장치 1대</p> <p>타) 시료보관용 항온항습장치 1대</p> <p>파) 항온항습실[온도 (23 ± 1)$^{\circ}\text{C}$,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p> <p>하) 회로시험기 1대</p> <p>거) 고압증기멸균기 1대</p> <p>너) 증류수제조장치 1대</p>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p> <p>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p>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p> <p>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p>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p> <p>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p>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총인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p> <p>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p>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p> <p>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p>
7) 수소이온농도 연속	기술직 5명(그 중 2명	가)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자동측정기	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8) 부유물질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1)나)부터 너)까지의 시설 및 장비

라. 소음·진동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계	기술직 2명	<p>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p> <p>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 대역: 31.5Hz~16kHz) 1대</p> <p>다) 표준음발생기[(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p> <p>(1) 200~500Hz 1대</p> <p>(2) 1,000Hz 1대</p> <p>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p> <p>마) 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음 발생기 1대</p> <p>바) 50~8,000Hz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음주파수 응답분석기 1대</p> <p>사) 기록장치 1대</p> <p>아) 무향실[125Hz~8kHz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dB) 이내인 시설이어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 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1대</p>
2) 진동레벨계	기술직 2명	<p>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Hz~90Hz) 1대</p> <p>나) 표준진동발생기 6.3~90Hz 1</p>

		<p>대</p> <p>다) 표준진동폭엽 1개</p> <p>라) 6.3 ~ 9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 주파수 이상이어야 한다)에서 정현진동(正弦振動)을 발생하는 진동가진기 1대</p> <p>마) 6.3 ~ 90Hz 범위의 모든 진동(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 주파수 이상을 말한다)을 분석할 수 있는 진동주파수 응답분석기 1대</p> <p>바) 기록장치 1대</p> <p>사) 무향실[125Hz ~ 8kHz 범위에서 역제곱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1데시벨(dB) 이내여야 한다] 1실 또는 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 ~ 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이 가능해야 한다) 1대</p>
--	--	---

마. 토양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저장시설 누출측정기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시간당 0.4ℓ 이하의 누출량을 감지하여 계량화할 수 있는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기(기준장비) 1대</p> <p>나) 9.8Pa 이하의 압력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지하매설 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기(기준장비) 1대</p> <p>다) 측정기기 환경시험용 온도 및 습도 가변시험시설 1대</p> <p>라) 직경 240cm, 길이 400cm 이상의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통형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안의 액체 및 압력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측정기기 시험시설 1대</p> <p>마) 전자저울(0.1mg 이하까지 측정</p>

		<p>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바)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pm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사) 절연저항측정기 1대</p> <p>아) 내전압측정기 1대</p> <p>자) 자동기록장치 1대</p>
--	--	--

바. 먹는물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p> <p>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다) 직류전압 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001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라)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의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pm 0.001mV$ 이내 정도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마)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pm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바) 절연저항측정기(1kV 이상의 전압을 가하여 2,000MΩ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사) 내전압측정기(1kV 이상의 교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아) 신호기록장치 1대</p> <p>자) 시료보관용 항온장치 1대</p> <p>차) 증류수제조장치 1대</p> <p>카) 항온수조[5~100$^{\circ}C$ 범위의 온도를 $\pm 1^{\circ}C$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1대</p> <p>타)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p>

		<p>다) 1대</p> <p>과) 항온항습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p>
2) 잔류염소 연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 장비) 1대</p> <p>나) 기준온도계(-20~9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대</p> <p>다) 1)나)부터 과)까지의 시설 및 장비</p>

사.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실내공간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만 해당한다) 시료채취장치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p>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p> <p>나) 위상차현미경 1대</p> <p>다) 전자현미경 1대</p> <p>라) 유량측정장치(100mL/min 이상 측정 가능하고 유량을 계속 더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5대</p> <p>마) 온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p> <p>바) 순간유량 측정장치(비눗방울측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대</p> <p>사) 압력측정장치(5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p> <p>아) 습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이어야 한다) 1대</p> <p>자) 세균 배양기 1대</p> <p>차) 시료포집펌프 1대</p> <p>카) 전자저울(0.0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p> <p>타)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p> <p>파)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p> <p>하) 자동기록장치 3대</p>

		거) 절연저항계측정기 성분별 각 1대 너) 압력펌프 1대 더) 미세먼지 공기포집기 3대 러) 가변저항기 2대 머) 차압계(정확도 $\pm 0.25\%$) 2대 버) 무균시험실 서) 장비검사실
2) 실내공간오염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및 라돈만 해당한다) 자동측정기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 (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라) 열 탈착기 1대 마) 전자저울(0.0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 사) 측정기기 교정가스(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이산화질소) 각 1대 아) 측정기기 교정가스 희석장치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이산화질소) 각 1대 자) 측정기기 영점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발생장치 1대 차)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카) 자동기록장치 3대 타) 절연저항계측정기 1대 파) 시료포집펌프 1대 하) 가변저항기 2대 거) 온도변환시험기(온도는 $-20 \sim 40^{\circ}\text{C}$ 범위에서 자동조절이 가능해야 하고, 온도기록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text{m} \times 1.5\text{m} \times 1.5\text{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너)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더) 압력펌프 1대

		러) 미세먼지 공기포집기 3대 머) 차압계(정확도 $\pm 0.25\%$) 2대 버) 장비검사실
--	--	--

3. 검정 업무

검정 대상 교정용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및 측정기기 교정액 제조장치 1대 나) 가스분석기 2대 다) 기체유량계(100 ~ 500mL/min) 1대 라) 수분분석기 1대
나. 측정기기 교정액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전기전도도검출기를 포함한다) 1대 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기(190~1,000nm) 1대 다) 초순수(超純水) 제조장치(수질 10M Ω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라) 고압증기멸균기(120℃에서 가열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배양기[(20 \pm 1)℃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바) 항온수조(10~150℃ 범위의 온도를 ± 1 ℃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분광광도계 1대 나) 색체계 1대
라.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준 표준필터 1세트 나) 분광광도계 1대
마. 매연포집용 여과지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분광광도계 1대 나) 파열광도기 1대 다) 전기로[(700 \pm 25)℃로 온도조절이 가능해야 한다] 1대 라) 전자저울(0.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1대 마) 헬쓰베리히 거름속도기 1대 바) 미세눈금자(최소 눈금이 2 μ m 이하인 것이어야 한다) 1대

비고

1.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업무별, 분야별 및 대상 측정기기별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복수의 업무, 복수의 분야 및 복수의 측정기기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된다.
3. 시설 및 장비란의 “기준장비”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로서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측정기기의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교정용품의 검정에 사용하는 측정기기를 말하며, 검사기관은 기준장비 및 교정용품에 대해 다른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정도검사 및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검사기관만 보유하고 있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은 그렇지 않다.
4. 기술능력란의 “기술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환경, 화공, 화학, 토목, 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전자·통신, 기계, 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이하 이 표에서 “관련 분야”라 한다)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및 검정 업무를 수행한 경력(검정 업무 검사기관의 경우 환경 측정·분석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사람
 - 다.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기술능력란의 “기능직”이란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2. 8. 18.>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제10조제4항 관련)

1. 서류평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다.

2. 현장평가

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호의 서류평가를 실시한 후 제출 서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1명 이상과 전문가 1명 이상으로 평가팀을 구성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해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 1) 기술능력 항목
- 2) 시설 및 장비 항목

나. 가목1)·2)의 항목에 관한 현장평가의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 가목1)·2)의 항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 1) 평가항목별로 각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나목에 따른 세부사항별 배점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평가팀원별로 각각 평점을 계산한 후 평가팀 전원의 점수를 합한 뒤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한다.

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목에 따른 최종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적합으로, 8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해야 한다.

비고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이 지정받은 분야와 같은 분야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당시에 제출했던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10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검사기관 지정서의 사본을 제출

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정도검사 업무 검사기관 지정 당시의 평가 내용, 공통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비고 제1호에 따라 현장평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 현장평가 점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부여한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분야별로 위반 횟수를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4조제1항제1호·제3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을 받은 후 2년 이	법 제14조	경고	경고	지정취소	

내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제1항제2호					
다. 법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하거나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3호	지정취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정도검사성적서 또는 검정성적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지연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4호의2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 갖춰야 하는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5호					
1) 기술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2) 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3) 시설 및 장비가 전혀 없는 경우		지정취소				
4) 시설 및 장비 중 일부가 부족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사. 법 제13조제3항 각 호	법 제14조	지정취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임명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제6호				
아.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자. 업무정지기간 중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에 관한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4조 제1항제8호	지정취소			

비고: 바목1)·2)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만 적용한다.

측정대행업의 세부등록기준 (제14조제1항 관련)

1. 대기 분야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삭제 <2020. 9. 29.> 3) 대기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대기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 (1) 황산화물(SO ₂) (2) 암모니아 (3) 이황화탄소 (4) 황화수소 (5) 먼지 (6) 매연 (7) 일산화탄소 (8) 질소산화물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1호의 대기 분야 환경기준 항목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

2. 수질 분야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1)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수질 분야 측정분석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수질환경산업기사 1명, 분석요원 1명 2)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독	1) 실험실 2) 다음 항목을 수질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실험기기 가) 기본항목(생태독성물질 시험만 하는 경우에는 (2)와 (3)은 적용하지 않는다) (1) 수소이온농도(pH) (2)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및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물질(SS) 나) 선택항목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제3호의 수질 및 수생태계 분야 환경기준 항목

<p>성 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1명 또는 수질환경 기사 자격을 소지한 자 중 생태 독성물질에 대한 시험 경력 1년 이상인 자 1명(생태독성물질 시험으로 한정한다)</p> <p>3) 삭제 <2020. 9. 29.></p> <p>4) 수질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p>	<p>(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정시험기준에 그 시험방법이 규정된 항목만 해당한다)</p> <p>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p>
---	--

3. 소음·진동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p>소음진동산업기사, 화학분석기능사, 환경기능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1명</p>	<p>1) 소음·진동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다음의 장비. 다만, 진동 분야의 장비는 진동을 측정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p> <p>가) 소음계와 진동레벨계</p> <p>나) 소음도기록계 및 진동레벨 기록계</p> <p>다) 소음계 외부교정기</p> <p>2) 측정업무용 차량 1대</p>

4. 실내공기질 분야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p>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대기환경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중 1명, 분석요원 1명</p> <p>2) 삭제 <2020. 9. 29.></p> <p>3) 실내공기질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p>	<p>1) 실험실</p> <p>2) 다음 항목을 실내공기질 분야 공정시험기준 중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시험방법에서 주 시험방법으로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p> <p>가) 미세먼지(PM10)</p> <p>나) 이산화탄소(CO2)</p> <p>다) 포름알데히드(HCHO)</p> <p>라) 총부유세균</p> <p>마) 일산화탄소(CO)</p> <p>바) 이산화질소(NO2)</p> <p>사) 라돈(Rn)</p> <p>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p> <p>자) 석면</p> <p>차) 초미세먼지(PM-2.5)</p> <p>카) 곰팡이</p>

	<p>타) 오존(O3)(「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 내의 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p> <p>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 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p>
--	---

5. 악취 분야

기술 능력	시설 및 장비
<p>1)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대기관리기술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대기 분야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한 사람 중 1명, 분석요원 1명</p> <p>2) 삭제 <2020. 9. 29.></p> <p>3) 악취 분야 숙련도 시험 및 현장 평가 적합 확인서</p>	<p>1) 실험실</p> <p>가) 공기희석관능 실험실</p> <p>나) 지정악취물질 실험실(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p> <p>2) 다음 항목을 악취 분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p> <p>가) 복합악취</p> <p>(1) 무취공기 제조장치 1식</p> <p>(2) 악취희석장치 1식</p> <p>나)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 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p> <p>3) 시료채취용 장비 등을 실을 수 있는 차량 1대(시료 변질 방지용 설비를 포함한다)</p>

비 고

1.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처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삭제 <2020. 9. 29.>
3. 분석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 가. 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환경기능사
 - 나. 환경측정분석사·대기환경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수질 환경산업기사
 - 다. 화공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환경공학 등 환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기술능력 중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대기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대기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또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수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수질분야 측정대행업의 경우 생태독성물질 시험에 관한 기술능력을 갖춘 수질분야 환경측정분석사 또는 수질환경기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을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5. 시설 및 장비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대기환경보전법」

다. 「먹는물관리법」

라. 「소음·진동관리법」

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바. 「화학물질관리법」

사. 「폐기물관리법」

아. 「하수도법」

자.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카. 「토양환경보전법」

6. 삭제 <2020. 9. 29.>

7. 삭제 <2020. 9. 29.>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6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빗공해 검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측정대행업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법 제17조 제1항제2호	경고	등록취소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산출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4) 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 등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4호	등록취소			
5)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5호				
가)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없는 경우		등록취소			
나) 기술능력 중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다) 기술능력 중 숙련도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라) 실험실이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등록취소			
마)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가 없는 경우		등록취소			
바) 중요 장비 및 실험기기 중 일부가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부족하거나 고장인 상태로 7일 이상 방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사) 측정업무용 차량이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만 해당한다)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아) 시료채취용 장비를 실을 수 없거나 시료변질 방지용 설비가 없는 경우(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는 제외한다)	법 제17조 제1항제6호	등록취소			
7) 법 제1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6호 의2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8) 법 제18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				
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또는 시약소모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측정대행 계약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측정기록부를 측정의뢰인에게 송부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라) 그 밖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9)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7호의2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10) 영업정지기간 중 측정대행 업무를 한 경우	법 제17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비고

1. 5)의 가) 및 나)의 행정처분기준은 기술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가 30일 이상 계속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5)의 마) 및 바)에서 "중요장비 및 실험기기"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비 및 실험기기를 말한다.

가. 대기 분야: 피토크관(pitot tube, 기체나 액체의 흐르는 속도를 구하는 장치), 흡입관, 가스미터, 기압계, 고온온도계, 진공펌프, 마노미터, 산소측정기, 건조기, 분광광도계 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화학천평(化學天秤) 및 킬달분해장치

나. 수질 분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부란기(孵卵器), 수욕조, 건조기, 분광광도계 또는 원자흡광광도계, 증류수제조기, 수소이온농도계(pH계), 비화수소 발생장치, 화학적산소요구량 환류장치, 전자포획검출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화학천평 및 킬달분해장치

다. 소음·진동 분야: 소음계, 소음도기록계 및 소음계외부교정기

라. 실내공기질 분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GC/MS),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HPLC), 열탈착장치(TD), 미니볼륨에어샘플러(Mini volume air sampler), 전자저울, 위상차 현미경, 일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자동), 이산화탄소측정기(비분산적외선법), 이산화질소측정기(화학발광법), 라

돈 연속모니터측정기 및 총부유세균측정장비(Bio air sampler)

마. 악취 분야

- 1) 복합악취: 시료채취장치, 무취공기 제조장치 및 악취희석장치
- 2)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지정악취물질 중 측정하려는 항목: 시료채취장치, 악취농축장비, 열탈착장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및 원자흡광광도계 중 측정항목별로 갖추어야 할 장비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제17조제2항 관련)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2.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환경 오염도를 정확하고 엄정하게 측정·분석하여야 하며, 측정 후 작성한 측정기록부 중 1부를 측정의뢰인에게 보내야 한다.
3. 보유차량에 국가기관의 오염물질 검사차량으로 잘못 알게 하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과대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가. 시료채취기록부(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시험기록부(시험항목, 일자, 분석자, 시험방법, 계산식, 기초시험자료, 분석기기 조작 조건, 측정 결과, 검정곡선(calibration curve), 전처리사항 등 분석과정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및 시약소모대장(소음·진동분야는 제외한다)
 - 나. 측정기록부 발송대장
 - 다.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정도관리 수행기록철
 - 라. 차량 운행일지
5.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 계약서를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6.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측정·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령이나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도관리 판정 기준 (제17조의3제1항 관련)

1. 숙련도 시험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은 Z값 (Z-score), 오차율 등을 사용하여 평가항목별로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기관을 평가한다. 단, 표준시료 개발 등을 위하여 예비로 실시한 항목은 기관평가에 활용하지 아니한다.

가. Z값에 의한 평가

1) Z값의 도출

측정값의 정규분포 변수로서 대상기관의 측정값과 기준값의 차를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로 나눈 값으로 산출한다.

$$Z = \frac{x - X}{s}$$

여기서, x 는 대상기관의 측정값

X 는 기준값

s 는 측정값의 분산정도 또는 목표표준편차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 가) 표준시료 제조값
-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도출된 개별 평가항목의 Z값에 따라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각각 “적합” 과 “부적합” 으로 한다.

항목별 Z 값에 따른 평가	
적합	부적합
$ Z \leq 2$	$2 < Z $

나. 오차율에 의한 평가

1) 오차율 산정방법

오차율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text{오차율}(\%) = \frac{\text{대상기관의 분석값} - \text{기준값}}{\text{기준값}} \times 100$$

단, 기준값은 시료의 제조방법, 시료의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4가지

방법 중 한 방법을 선택한다.

- 가) 표준시료 제조값
- 나) 전문기관에서 분석한 평균값
- 다) 인증표준물질과의 비교로부터 얻은 값
- 라) 대상기관의 분석 평균값

2) 분야별 항목평가는 개별 항목의 오차율이 $\pm 30\%$ 이하인 경우 “적합”, $\pm 30\%$ 보다 큰 경우 “부적합”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다. 기타 방법에 의한 평가

미생물과 같이 정성분석을 실시하는 항목과 위 “가”, “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 할 수 없는 경우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분야별 기관 평가는 “가”에서부터 “다”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분야별 항목 평가결과를 만족 “5점”, 불만족 “0점”으로 부여하여 총점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며, 분야별 환산점수는 연차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연도	적합	부적합
2012년 ~ 2014년	≥ 80 점	< 80 점
2015년부터	≥ 90 점	< 90 점

<분야별 환산점수 산출식>

$$\text{환산점수} = \frac{\text{총점}}{\text{항목수}} \times \frac{100}{5}$$

마. 숙련도 시험 평가결과가 부적합인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실시하고 재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당해 연도 숙련도 시험을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단, 법 제18조의2제4항,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제17조의3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숙련도 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시험 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최종 부적합으로 평가한다.

2. 현장평가 판정기준

가. 현장평가 내용은 기술인력, 시설, 장비, 실험실 운영을 포함한 운영 및 기술, 시험·검사 능력, 이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한 시험분야별 분석능력으로 구분 한다.

나. “가”의 현장평가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별도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다. “나”의 평가내용 세부사항에 대한 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숙련도 시험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의 환산 점수를 “0” 점으로 처리하고 평가항목 수에는 포함시켜 계산한다.

$$\text{합계평점} = (\text{운영 및 기술 점검표의 환산점수} + \frac{\text{시험분야별 분석능력 점검표의 환산점수합}}{\text{평가항목수}}) \div 2$$

합계 평점은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라. 현장평가 결과는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한다.

구 분	판정기준
적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흡사항이 없는 경우 2.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이상이며 현장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의 보완조치에 대하여 정도관리 심의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부적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2. “다”의 현장평가 합계평점이 70점 이상이나 현장평가에서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미흡사항의 보완조치에 대하여 정도관리 심의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3. 현장평가 시 중대한 미흡사항이 발견되어 현장평가를 종료한 경우 4. 현장평가를 시작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미흡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개별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p>※ 현장평가 시 중대한 미흡사항이란 다음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력의 허위 기재(자격증만 대여해 놓은 경우 포함) 2. 숙련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및 숙련도 표준 시료의 위탁분석 행위 등)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산출(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및 시험 성적서의 거짓 기재 및 발급 등)한 경우 4.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개별법의 등록·지정·인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중대한 미흡사항 	

3. 정도관리 판정기준

숙련도 시험 결과와 현장평가 결과가 모두 판정기준에 적합한 경우만 정도관리 적합으로 판정한다.

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제17조의4제3항 관련)

1. 대기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 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 검사기관
- 다.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 라.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2. 수질환경측정분석사를 확보해야 하는 시험·검사기관

- 가.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 검사기관
- 나.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다.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제5호·제6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검사를 하는 자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환경측정분석사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사에 대하여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4차
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록·제출 또는 공표하여야 하는 환경오염도의 측정분석 업무를 거짓으로 하거나 측정기록부를 조작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경고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나.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다.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 제1항	자격취소			
---------------------------------	------------	------	--	--	--

성능시험·정도검사, 성능인증 및 검정 수수료(제30조제1항 관련)

1. 측정기기 성능시험·정도검사 수수료

분야	대상 측정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정도검사
가. 자동차 분야	1)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765,000	321,000
	나)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1) 4륜차용	772,000	356,000
	(2) 2륜차용	772,000	416,000
	(3)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2,421,000	386,000
	다) 원동기동력계용 및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1) 원동기동력계용	916,000	414,000
	(2) 차대동력계용(4륜차용)	1,016,000	414,000
	(3) 차대동력계용(2륜차용)	1,314,000	488,000
	(4) IM240 배기유량 직접 측정방법	1,282,000	308,000
	(5) 암모니아 측정장치	1,051,000	523,000
	라) 증발가스 분석기와 그 부속기기	1,138,000	701,000
	마)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차대 및 원동기 동력계용(전체용)	571,000	287,000
	(2) 원동기 동력계용(부분채취식용)	945,000	376,000
	(3) 입자개수 측정장치	1,740,000	289,000
	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2,117,000	909,000
	2)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가)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600,000	271,000
	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경유차 질소산화물을 측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377,000	277,000
	다)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경유차 질소산화물 측정용)	1,051,000	257,000
라) 자동차 배출가스(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분석기,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일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20,000	85,000	
(2) 탄화수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65,000	85,000	
(3)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762,000	108,000	
(4) 공기과잉률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측정기 혼합형)	762,000	96,000	
마) 매연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여지반사식	805,000	123,000
	(2) 광투과식	1,216,000	210,000
	바) 매연측정용 비디오카메라와 그 부속기기	432,000	103,000
	사) 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 입자상	1,496,000	432,000
	(2) 가스상	6,868,000	1,474,000
나. 대기 분야	1) 대기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821,000	218,000
	나)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	986,000	265,000
	2) 굴뚝배출가스 연속·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성분 측정기	1,315,000	978,000
	나) 가스성분 측정기	1,427,000	916,000
	다)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	1,716,000	1,343,000
	라) 유속계	1,131,000	528,000
	3) 대기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이산화황	1,180,000	668,000
	나) 일산화탄소	1,180,000	668,000
	다) 질소산화물	1,180,000	668,000
	라) 오존	1,180,000	668,000
	마) 미세먼지	974,000	623,000
	바) 초미세먼지	974,000	623,000
4) 굴뚝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입자상시료	783,000	604,000	
나) 가스상시료	688,000	508,000	
5) 대기질시료 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미세먼지	1,418,000	703,000	
나) 초미세먼지	1,418,000	703,000	
다. 수질 분야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07,000	421,000
	2) 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701,000	851,000
	3)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75,000	880,000
	4) 총질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523,000	851,000
	5) 총인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523,000	851,000
	6) 총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679,000	854,000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45,000	651,000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9,000	698,000
라. 소음·진동 분야	1) 소음계와 그 부속기기	946,000	87,000
	2) 소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149,000	323,000
	3) 진동레벨계와 그 부속기기	949,000	89,000
마. 토양 분야	1)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2,844,000	1,837,000
	2) 지하매설저장시설 기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372,000	358,000
	3) 지상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332,000	3,458,000
바. 먹는물 분야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47,000	497,000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149,000	499,000
사. 실내공기질 분야	1)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실내건축자재 방출시험 체임버시스템)	1,324,000	851,000
	나)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736,000	194,000
	다)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753,000	267,000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석면, 총부유세균 및 부유곰팡이)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753,000	267,000
	2)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실내공간오염물질(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74,000	623,000
	나) 실내공간오염물질(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6,000	668,000
	다) 실내공간오염물질(오존)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6,000	668,000
	라) 실내공간오염물질(이산화질소)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1,266,000	668,000
	마) 실내공간오염물질(라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902,000	564,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나목1)나) 및 같은 목 2)다)의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의 경우에는 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수료의 35%를 가산한다.
3. 나목2)가)·나)·다)의 측정기기가 사전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가 실시한 측정기기의 정밀도에

관한 시험·검사 등을 받아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정도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금액을 수수료로 한다.

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원)
굴뚝배출가스 연속·유속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성분 측정기	484,000
나. 가스성분 측정기	484,000
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등 2개 이상의 항목을 측정하는 다항목 측정기기(2개 항목을 초과하는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 수료의 35%를 가산한다)	589,000

4. 마목1)의 토양분야 지하매설저장시설 액상부 누출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경우에는 탐침을 1개 추가할 때마다 10만원을 가산한다.
5.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수수료에 가산한다. 이 경우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2.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수수료

분야	대상기기	수수료(원)	
		성능시험 (실내)	성능시험 (실외)
가. 대기분야	1) 이산화질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23,000	2,286,000
	2) 일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81,000	2,285,000
	3) 오존 측정용 간이측정기	955,000	2,285,000
나. 수질분야	1) 용존산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773,000	1,636,000
	2) 수소이온농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765,000	1,637,000
다. 소음 분야	소음 측정용 간이측정기	675,000	1,507,000
라. 먹는물 분야	1) 탁도 측정용 간이측정기	718,000	1,637,000
	2) 잔류염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720,000	1,637,000
마. 실내공기질 분야	1) 이산화탄소 측정용 간이측정기	923,000	2,286,000
	2) 라돈 측정용 간이측정기	722,000	2,286,0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실외시험 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는 출장비를 수수료에 가산한다.

3. 교정용품 검정 수수료

교정용품	수수료(원)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1항목 기준)	52,800
나.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1매 기준)	11,8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검사기관을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21,200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필터(1개 기준)	42,100

라. 매연 포집용 여과지 원형(100매/1박스 기준)	2,2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검사기관을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6,100
마. 매연 포집용 여과지 롤(50m/1롤 기준)	4,300
※ 검정된 교정용품을 검사기관을 통해 직접 공급받는 경우의 수수료	16,500

비고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한다.
2. 현장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현장검사에 소요되는 출장비용(현장까지의 이동 및 복귀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을 수수료에 가산한다. 이 경우 1일당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에 준하여 산정한다.

측정기기형식승인(변경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자동차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토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_____)	

신청내용	⑤ 제작사	⑥ 제작국
	⑦ 기기명칭	⑧ 형 식
	⑨ 상품명(고유명칭)	⑩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⑪ 최소누금(단위)	⑫ 공인측정오차범위 ±
	⑬ 측정방법 및 원리	
	⑭ 변경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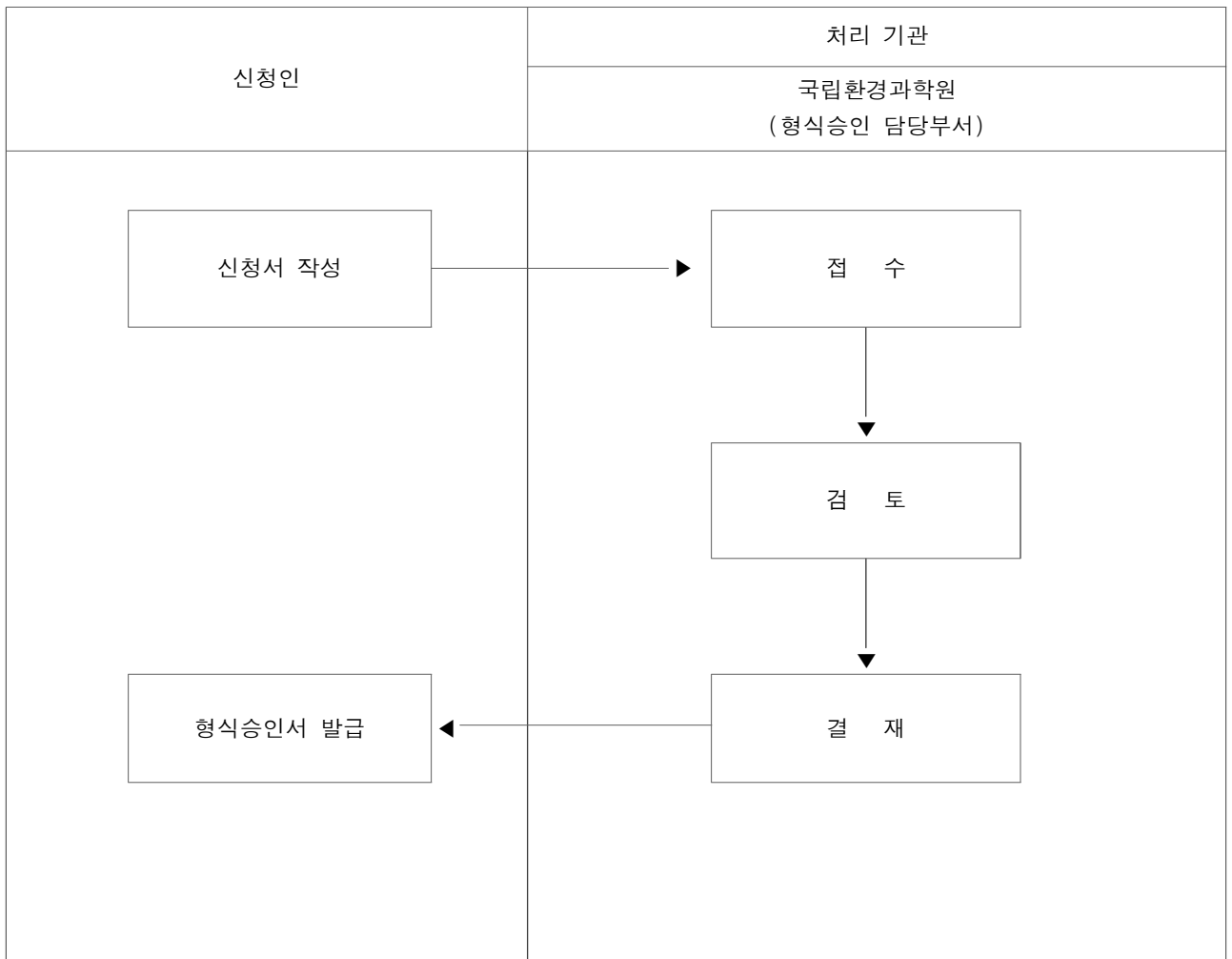
구비서류	1.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나.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접검표	2.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가. 형식승인서나 수입신고수리서 나. 변경사항에 대한 설명서 다. 성능시험성적서 라.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접검표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1. ⑤란 및 ⑥란은 수입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2. ⑬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Change approval) Certificate of Instrument

(front)

receipt number	receipt date	process 7 days
----------------	--------------	----------------

[] vehicle [] air [] water [] noise·vibration [] soil [] drinking water [] indoor air quality

Applicant	① Vendor	
	② Name	③ Date of Birth(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④ Address (Phone: _____)	
	⑤ Business address (Phone: _____)	
	⑥ Company	
Application information	⑦ Country	
	⑧ Product	⑨ Type
	⑩ Model Name	⑪ Measuring range minimum : _____ maximum : _____
	⑫ Minimum scale	⑬ Bias ± _____
	⑭ Method and Process	
	⑮ Change/Modification of type Approval	

I hereby apply for type/chang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the Article 9 Section 1·7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5 Section 2 of the same law.

mm/dd/yyyy

applicant: _____ name or sign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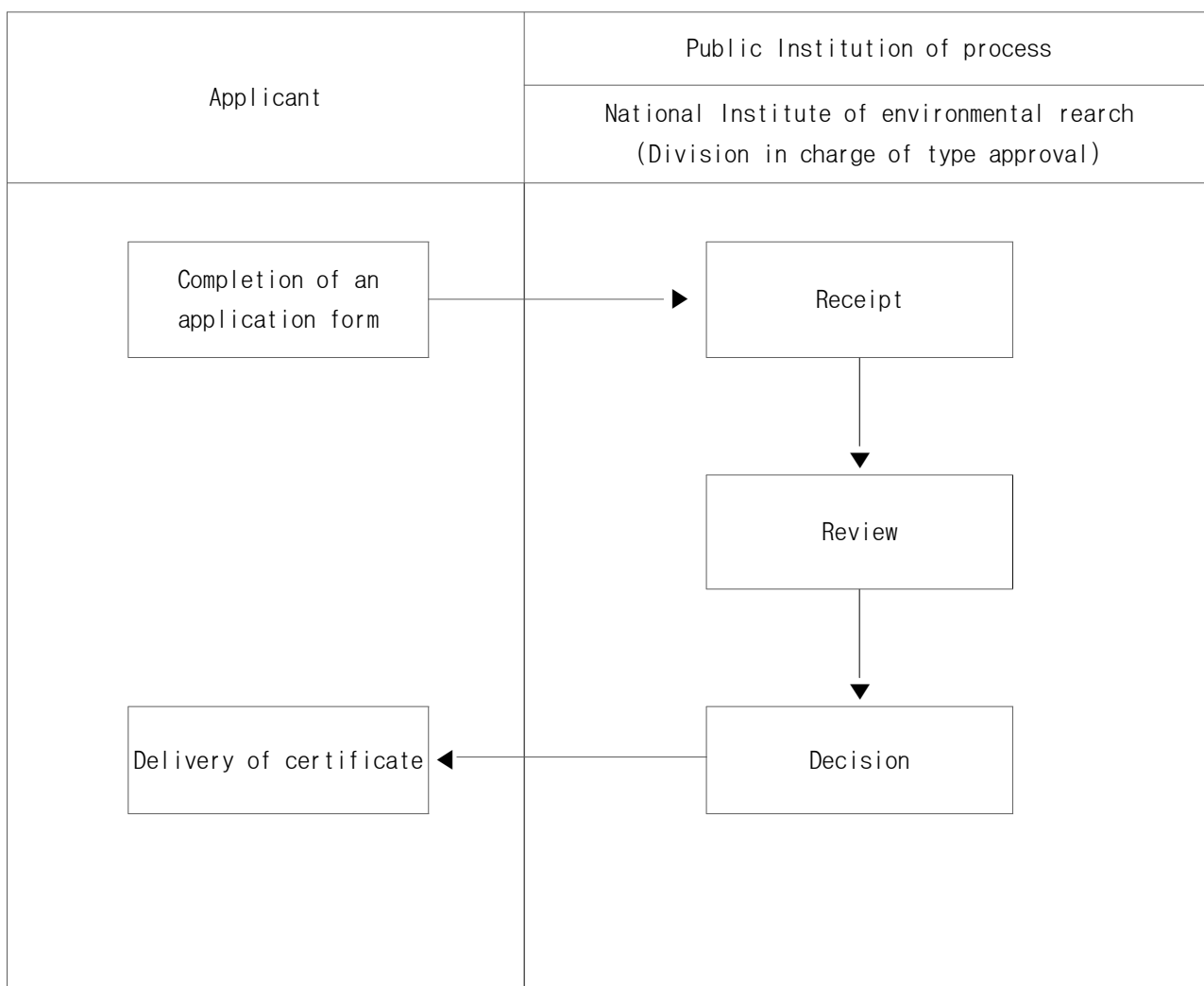
Required documents	1. Application for type approval a. Documents describing products b. Manual on process and performance c. 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 documents of measuring device software	2. Application for change/modification approval a. Type approval certificate or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b. Document on modification c. Performance test reports d. Confirmation documents of measuring device software	no fee
--------------------	---	--	--------

Guideline for application form filling

1. ⑥ and ⑦ are only for the case of import.
2. Please use another sheet of paper if ⑭ is not enough

Process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following the steps bellow.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	------	------	----

형식승인 []

변경승인 []

예비형식승인 []

① 제출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제조·수입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② 대상 측정기기	제조사/제조국	기기명칭/상품명(고유명칭)

③ 점검 항목	④ 점검 결과
1. 대상 측정기기의 사용 과정에서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변수(이하 “상수·변수”라 한다) 등이 변경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 전후의 상태와 변경일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기록이 생성된다.	예 [] 아니오 []
2. 대상 측정기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나목 또는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점검인이 제출하는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임의 기능이 없다.	예 [] 아니오 []
3. 대상 측정기기에는 상수·변수나 측정결과를 정상적인 교정 외의 방법으로 임의 변경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기능·장치가 없다.	예 [] 아니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또는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점검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비 고

- ①의 제출인은 제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9조제2항제1항에 따라 예비형식승인을 신청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②의 대상 측정기기는 제출인이 형식승인·변경승인 또는 예비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측정기기를 말합니다.
- ③의 점검 항목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④의 점검 결과로 아니오[]에 표시합니다.

측정기기 형식승인서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승인내용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 (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승인조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QR코드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 거	확 인

Type Approval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Instrument

(front)

Certificate No		
Applicant	Vendor	
	Name	
	Address (Phone :)	
	Business address (Phone :)	
Approval information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unit)	Bias ±
	Approval Conditions	

We certify type approval as stated above under the Article 9 Section 1·7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5 Section 3 of the same law.

mm/dd/yyyy

QR코드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input type="checkbox"/> 제조 <input type="checkbox"/> 수입 <input type="checkbox"/> 승인 취소	측정기기 형식승인 관리대장	형식승인번호	
		형식승인연월일	
상호 (사업장 명칭)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형식승인사항			
기기명칭	형식	제작사	측정범위
			최소 눈금
			오차범위
승인조건			
측정방법 및 원리			
형식승인 취소 사유	※ 형식승인이 취소된 측정기기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자동차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토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신고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형식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측정방법 및 원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입신고필증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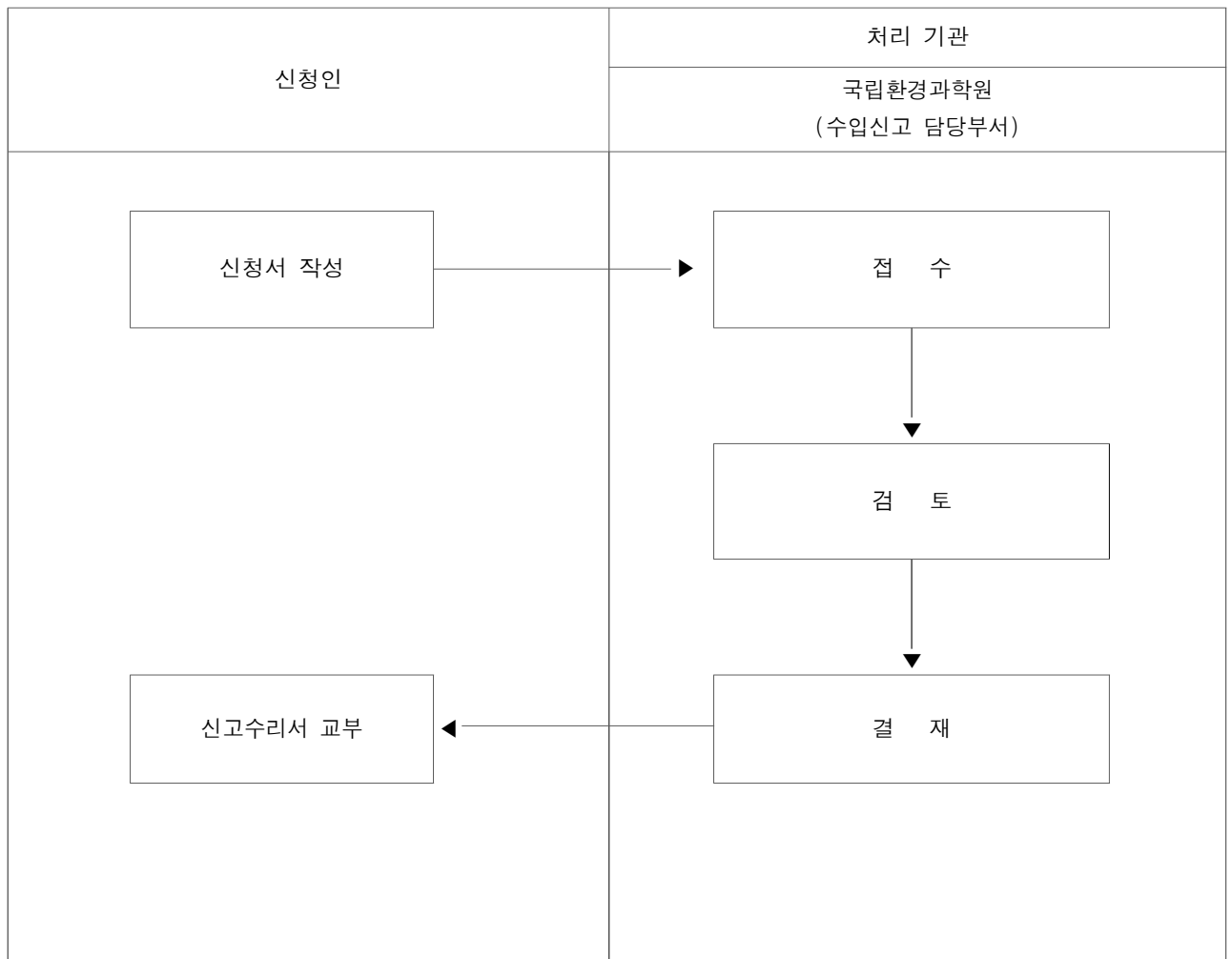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Import Declaration of Environmental Instrument

(front)

receipt number	receipt date	process 7 days
----------------	--------------	----------------

vehicle air water noise·vibration soil drinking water indoor air quality

Applicant	Vendor	
	Name	Date of Birth(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Address (Phone :)	
	Business address (Phone :)	

Application information	Certificate No	Issue date
	Company	Country
	Product	Type
	Model Name	Measuring range minimum : maximum :
	Minimum scale	Bias ±
	Method and Principle	

I hereby declare the import of an environmental instrument as stated above under the Article 9 Section 2·7 of the law on Environmental Test and Inspection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Article 6 Section 1 of the same law.

mm/dd/yyyy

applicant: name signatur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confirmation by an official> a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A reporter submits a copy of the certificate if he/she doesn't agree to confirmation)	no fee
--	--------

I hereby agree that an official concerned checks the information stated above through information-sharing under the Article 36 Section 1 of the E-Government Law.

applicant(name) signature

환경측정기기 수입신고수리서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고내용	형식승인번호	승인연월일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준수사항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의 신고를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측정기기에비형식승인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별도규정
------	-----	------	------

[] 자동차 [] 대 기 [] 수 질 [] 소음·진동 [] 토 양 [] 먹는물 [] 실내공기질

신청인	① 상호 (사업장명칭)	
	②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소 (전화번호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용	⑥ 제작사	⑦ 제작국
	⑧ 기기명칭	⑨ 형 식
	⑩ 상품명 (고유명칭)	⑪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⑫ 최소누금(단위)	⑬ 공인측정오차범위 ±
	⑭ 측정방법 및 원리	
	⑮ 변경내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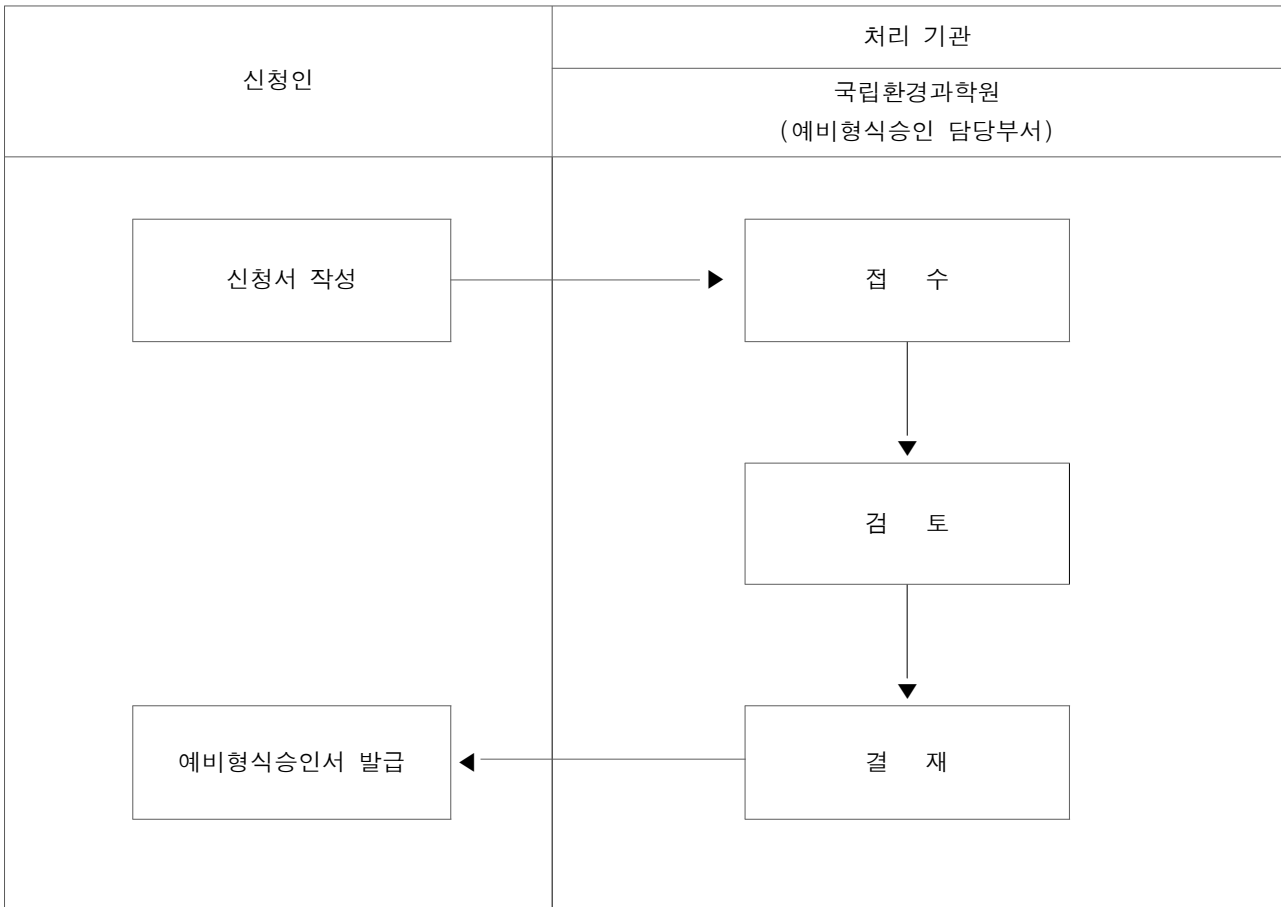
구비서류	1.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작동원리와 성능에 관한 설명서 3. 측정기기 운용프로그램 비공개접속경로 자체접검표 4. 성능인증서(인증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 ⑥란 및 ⑦란은 수입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⑭란은 부족한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도 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서

(앞쪽)

승인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 (사업장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승인내용	제작사	제작국
	기기명칭	형 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 최대 :
	⑪ 최소눈금 (단위)	⑫ 공인측정오차범위 ±
	⑬ 승인조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형식승인기준이 마련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연 월 일	변경사항	변경조건	근 거	확 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오차범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첨부서류	1.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에 관한 서류 2. 간이측정기의 작동원리 및 성능에 관한 설명서
------	---

인증번호 제 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상호 (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인증내용	제조사	제조국가
	기기명칭	측정방식
	상품명(고유명칭)	측정범위 최소: 최대:
	최소눈금(단위)	공인측정 오차범위 ±
	성능인증 등급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능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장 직인</p> <p>QR코드</p>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9.7.13>

측정기기 및 그 부속기기 정도검사 점검표

1. 일반사항

회 사 명		제 작 회 사	
대 표 자		제 작 번 호 (연 월 일)	
형 식		형식승인번호	
취 득 일 (연 월 일)		직전 정도검사일 (연 월 일)	

2. 기술사항

항 목	세 부 시 험 기 준	시 험 결 과	비 고
1. 설치규격			
2. 구조			
3. 성능			
종합판정 및 의견		검 사 자	(인)

※ 위 양식의 형식과 내용은 측정기기와 그 부속기기의 종류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장이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제 호

정도검사 증명서

QR코드

품 명:

검 사 일 자:

유 효 기 간: . . . 까지

형식승인번호:

제 조 사:

제 조 번 호:

검 사 기 관:

검 사 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거친 측정기기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직인

< 비고 >

1. 정도검사 증명서는 환경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2. 환경측정기기에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정도검사 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정용품 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아래 ※ 참조
------	-----	--------------

[] 교정가스 [] 교정용 표준지·표준필터 [] 매연포집용 여과지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구분	신청구분	규격	수량
표준지· 표준필터	[] 공 급 [] 교 정	[] 10% [] 20% [] 30% [] 40% [] 50% [] 70% [] 90%	매
	※ 첨부 : 교정신청 매연표준지 또는 매연표준필터		

여과지	[] 공 급 [] 검 사	<input type="checkbox"/> 원형 (φ 45mm, 100매) <input type="checkbox"/> 롤형 (φ 25.4mm, 50m) <input type="checkbox"/> 롤형 (φ 70.0mm, 50m)	박스 를 를
	※ 첨부 : 교정신청 여과지		

교정가스	[] 검 정		() 병 () 항목					
	번호	용기 번호	가스 종류	용기용량 (L)	총진압력 (Pa)	제 조 일	표시 농도	교정대상 분석기

* 첨부 : 교정신청 교정가스가 충전된 용기, 자체성적서(검정서) 1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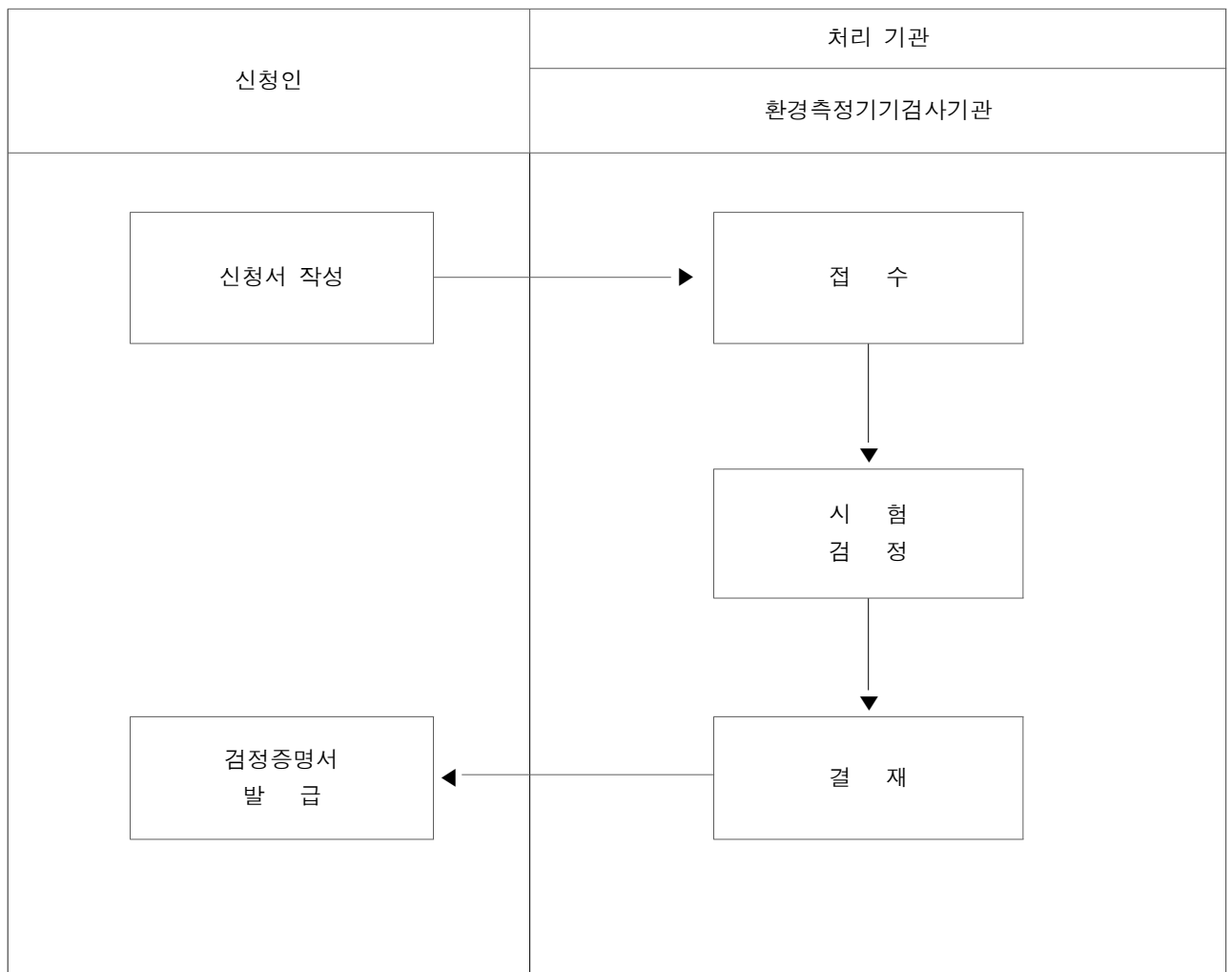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귀하

※처리기간	1. 측정기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물질: 15일 2.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표준지와 표준필터: 5일 3. 매연측정기의 교정을 위한 매연포집용 여과지: 20일	수수료는 별도규정에 따름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측정기기 교정가스 검정성적서

의뢰업체명		접수 번호	
용기 번호		총진 압력	
용 도		용기 규격	
검정연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표시농도	성 분	농 도	
기 준	환경측정기기 교정용(분석오차 ± 2% 이내)		
검사 결과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정한 성적서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직인 </p>			

< 비고 >

교정가스의 관리 및 보관에 따라 농도 및 유효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 호

검정증명서

품 명

검사일자

유효기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검정을 거친 교정용품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직인

< 비고 >

1. 검정증명서는 환경측정기기의 사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합니다.
2. 교정용품의 붙이는 면을 고려하여 검정증명서의 규격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정도검사 [] 검정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④ 생년월일
	⑤ 주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업무, 측정 분야 및 대상 기기	⑦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⑧ 정도검사	
	⑨ 검정	
신청 요건	⑩ 기술능력 확보 현황	
	⑪ 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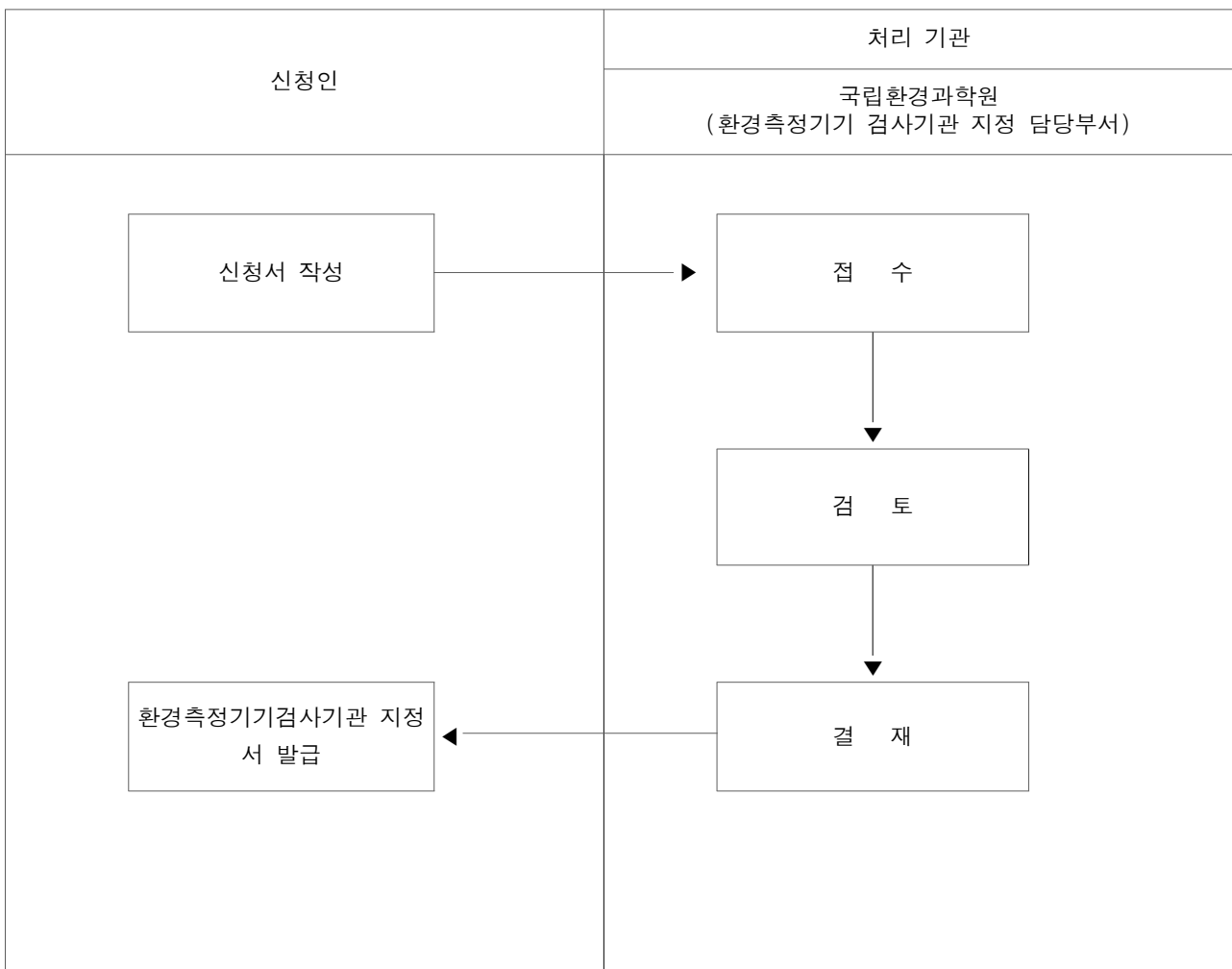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⑩란과 ⑪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 지정서
[] 변경지정서

(앞쪽)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정도검사 [] 검정

상호(사업장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업무, 분야 및 대상기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검정	
지정조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변경)내용 현황

지정(변경)분야	지정(변경)연월일	지정(변경)내용	지정(변경)근거	확 인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지정번호	제 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검사분야 또는 대상기기 변경의 경우에는 20일)
------	-----	-----	--

[]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 정도검사 [] 검정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주소(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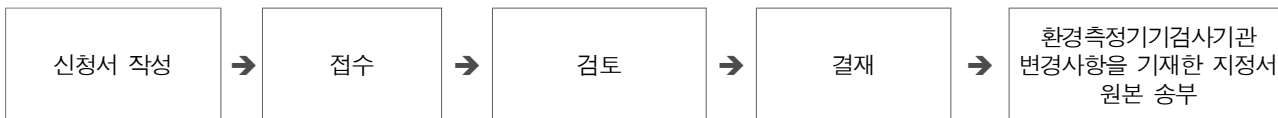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⑤~⑥의 기재사항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 담당부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신청서 (측정대행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실험실 주소 (전화번호:)

신청 분야	<input type="checkbox"/> 대기 <input type="checkbox"/> 수질 <input type="checkbox"/> 악취 <input type="checkbox"/> 실내공기질
-------	--

측정대행 항목	
---------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제6항에 따라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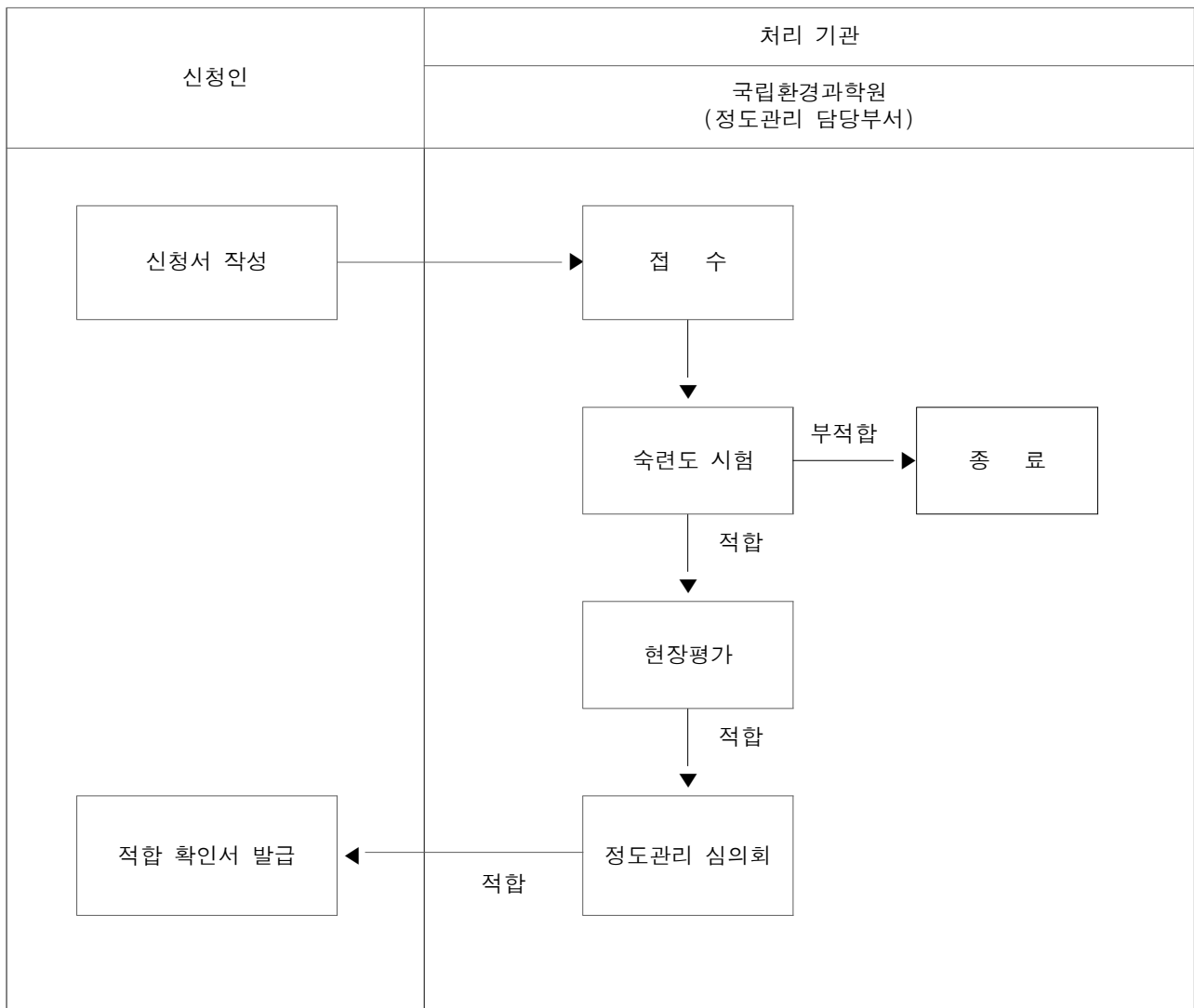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측정대행 항목별 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2. 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번호 제 호	
측정대행업 등록증	
[]대기 []수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성명 (법인의 경우 대표자)	
상호(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실험실소재지	(전화번호 :)
측정대행 항목	
등록조건	
<p>「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직인</p>	

측정대행업 등록대장

등록상황

상 호(명칭)		(전화번호:)		
		종 별	등록번호	등록일자
		대기 측정대행등록업	제 호	
		수질 측정대행등록업	제 호	
		소음진동 측정대행업	제 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등록업	제 호	
		악취 측정대행등록업	제 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실험실 소재지		면적(m ²)		
측정대행항목		대기:	수질:	소음진동:
측정대행구역		실내공기질:	악취:	
그 밖의 참고사항				

종별 대행실적(횟수)

연 도	계	1종	2종	3종	4종	5종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업종별 대행실적(횟수)

연 도	계	대 기	수 질	소음·진동	실내공기질	악취

측정대행업 등록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	-----	---------

[] 대기 [] 수질 [] 소음·진동 [] 실내공기질 [] 약취

신청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사업장 명칭)	
	주소 (전화번호:)	

변경신청 내용	변경내용
	변경사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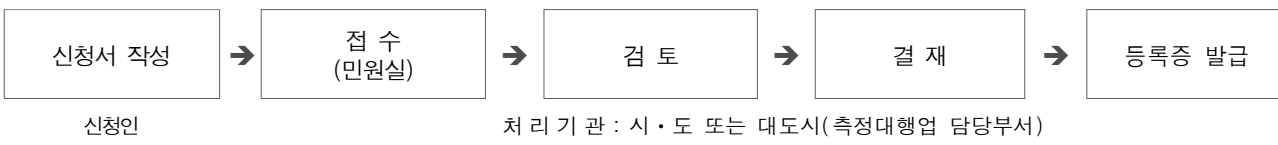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측정대행업등록증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소음·진동 분야 외의 항목으로 측정대행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분야별 5,000원
------	---	-------------------

처리절차



측정대행계약 체결사실 통보서

측정 대행 업자	상호(사업장 명칭)	측정대행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번호	측정대행 의뢰기관 명칭	측정대행 의뢰기관 사업장 소재지	측정항목 및 주기	측정항목별 분석수수료 단가	측정대행기간		비고
						개시일	종료(예정)일	
측정대행 계약실적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귀하

첨부서류	표준계약서에 따라 작성한 측정대행계약서 등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업무규정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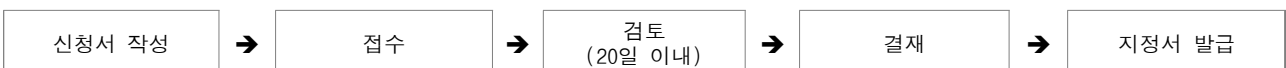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 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및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환경부

1-1. 대기분야 측정기록부

대기 측정기록부								
(이 서식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나목의 19), 20), 22), 23), 24)와 제2호나목의 29), 30), 32), 33), 34) 시설에서 TSP, NOx, SOx 항목을 측정할 경우에 작성한다.)								
① 의 뢰 인	상 호(기관명)					② 일 반 현 황		
	소 재 지(주소)							
	대표자(의뢰인)							
	환경기술인							
		업 종						
		종 별						
		주 생산 품						
③ 의 뢰 내 용	측 정 용 도							
	대상의 명 칭 (측정지점)	굴뚝 명칭			굴뚝 종별			
	의뢰 항목							
④ 시 료 채 취	현 장 기 상	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	%	mmHg		m/s		
	배 출 가 스	배출가스 유량		실측산소농도	표준산소농도	배출가스 속도		
		Sm ³ /시간		%	%	m/s		
	굴 뚝	굴뚝 높이		m	굴뚝안지름(측정공)			
		명 칭		대 상 물 질		방 지 효 율		
					%			
					%			
채 취 일 시				시료채취자	(서명)			
⑤ 시 설 가 동 상 황	측정당시 시간당 사용(생산)량							
	배출시설 명칭	연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소각량	원료투입량	종류	단위	방지시설 명칭
⑥ 측 정 분 석 결 과	측정항목	허용 기준	측정분석값	측정시간 (환경질에만 해당함)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비 고	
				~				
				~				
				~				
	분석기간	~		분석책임자	(서명)			
⑦ 종합 의견								
위와 같이 측정분석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								
년 월 일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의뢰사항과 관련이 없는 난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됩니다. ※ 액체연료는 황함유량을 ()안에 %단위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2. 수질분야 측정기록부

수질 측정기록부					
① 의뢰인	상 호(기관명)				
	소 재 지(주소)				
	대 표 자(의뢰인)				
	환 경 기 술 인				
② 일반현황	시 설 별				
	종 류 별				
	주 생 산 품				
③ 의뢰내용	측 정 용 도				
	대 상 의 명 칭 (측정지점)				
	의 퇴 항 목				
④ 시료채취	채 취 용 기 및 수 량				
	채 취 자 의 견				
	채 취 일 시	시료채취자		(서명)	
⑤ 측정분석 결과	측정항목	관련 기준	측정분석값	측정분석방법 (기기명)	비 고
	분석기간	~	분석책임자	(서명)	
⑥ 총 합 의 견					
<p>위와 같이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대표자 성명</p> <p style="text-align: right;">(서명 또는 인)</p> <p>※ 의뢰사항과 관련이 없는 난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됩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관리번호 : 제 호

정도관리 검증서
Certificate
of Environmental Laboratory

1. 기관명:
2. 대표자:
3. 법인(사업자)등록번호:
4. 주 소:
5. 유효기간:
6. 검증분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에 따라 정도관리 실시결과 판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정도관리 신청서(부적합 시험·검사기관 신청용)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실험실 주소	(전화번호:)	
신청 분야	현장평가	<input type="checkbox"/> 대기 <input type="checkbox"/> 수질 <input type="checkbox"/> 먹는물 <input type="checkbox"/> 토양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input type="checkbox"/> 약취 <input type="checkbox"/> 실내공기질 <input type="checkbox"/> POPs	
	숙련도 시험	<input type="checkbox"/> 대기 <input type="checkbox"/> 수질 <input type="checkbox"/> 먹는물 <input type="checkbox"/> 토양 <input type="checkbox"/> 폐기물 <input type="checkbox"/> 약취 <input type="checkbox"/> 실내공기질 <input type="checkbox"/> POPs	
측정대행 항목	※ 측정대행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정도관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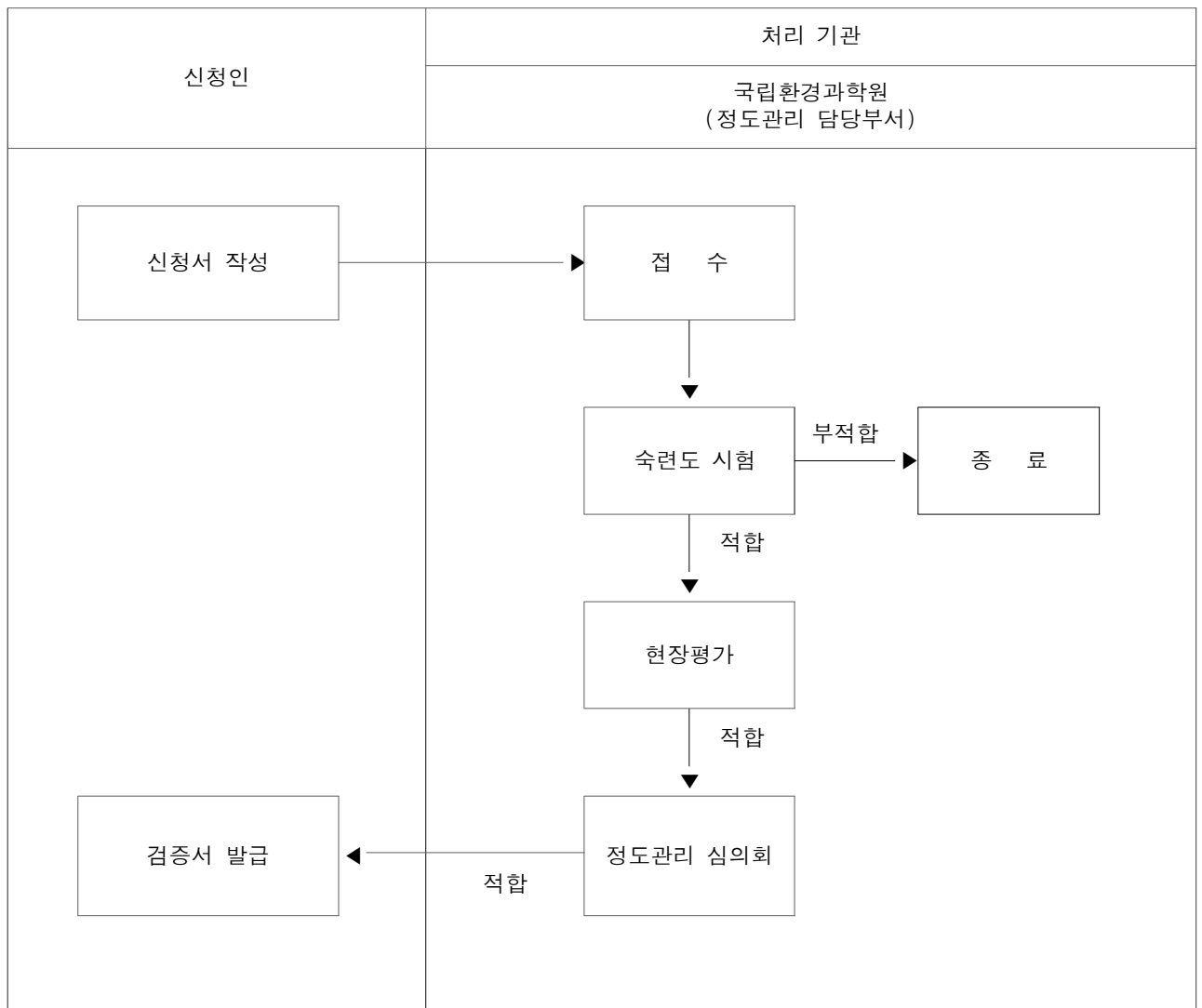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신청분야 및 항목에 대한 시설, 장비 현황 2. 정도관리 조직도 및 업무분장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4. 9. 26.>

[시행일: 2025. 1. 1.]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 수수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수수료의 감면·반환에 관련된 부분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원본)

※란은 수험자가 기입하지 않습니다.

(앞쪽)

①응시번호	※			사 진 (3.5cm×4.5cm)
②검정분야	응시시험	[] 제1차 필기 [] 제2차 실기		
③성명	(한글)	(한자)		
⑥전화번호	일반전화	④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⑤주소 (주민등록지)		
⑦면제신청(해당자만 기입)	[] 필기시험 합격	제 회	접수담당 확인	(인)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해당자만 기입)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3.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응시하고자 다음 사항을 서약하고 이 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원서에 적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으면 합격 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제 회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표

⑨수험번호	※			사 진 (3.5cm×4.5cm)
⑩검정분야				
⑪성명	⑫주민등록번호			
⑬시험일시 및 장소				
년 월 일				
검정기관의 장 (인)				
※ 주의사항				
1. 실기시험은 시험장의 시설, 장비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행되므로, 평일에 시행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 시행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 발급 안내: 준비물(신분증, 증명사진 1장, 발급수수료), 발급장소(검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합니다)				

검정기관 확인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확인합니다)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검정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검정기관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응시원서 기재요령

- 이 원서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응시원서로, 필기, 실기를 구분하여 표로 적어야 합니다.
- 1. 모든 내용은 정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숫자는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2. 제출일자: 응시원서 원본과 응시표에 제출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 3. 검정분야②⑩: 응시하려는 분야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4. 성명③⑪: 한글로 적되 원본의 한자란에는 한자를 적어야 합니다.
- 5. 주민등록번호④⑫: 주민등록번호는 칸에 맞추어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6. 주소⑤: 주민등록지 주소를 적되, 통·반(아파트인 경우 동·호수)까지 적어야 합니다.
- 7. 면제신청⑦: 환경측정분석사 필기시험을 2년 이내에 합격한 경우에만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 8.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⑧응시 수수료 감면신청란 중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기입한 경우에만 작성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9. 사진: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 규격의 동일 원판으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붙여야 합니다.

응시자 주의사항

1. 응시원서에 잘못 적어 착오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검정기관이 책임지지 아니하니,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2. 접수된 응시원서와 그 밖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다만, 수수료는 검정시행형태, 기간, 사유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환불하여 드립니다).
3.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 발급 시까지 이 수험표를 깨끗이 보관하여야 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2년 동안(2년 이내에 검정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1회로 한정합니다) 필기시험을 면제받게 됩니다.
4.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는 수험표에 적혀 있는 것과 공고된 것을 반드시 대조 확인하고, 실기시험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니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5. 응시자는 필기시험 시 (1)수험표 (2)신분증 (3)검은색 사인펜 (4)검은색 볼펜 (5)계산기 등을 가지고 지정된 입실시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그 후에는 입실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 필기도구 및 계산기를 남에게 빌리거나 빌려주지 못하며,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PDA, 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카메라, 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그 자격이 취소됩니다.
8. 응시원서 접수처 및 검정장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대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3호서식] 삭제 <2014.12.29.>

[별지 제25호서식]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취득자 관리대장

자격종목:

연도:

성명	성별	자격번호		근무처명	주소(전화번호)	자격 취소·정지, 재발급, 기타
주민등록번호		합격 일자	발급 일자		근무처 소재지(전화번호)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내용	자격종목		
	자격증 반납여부	반납	분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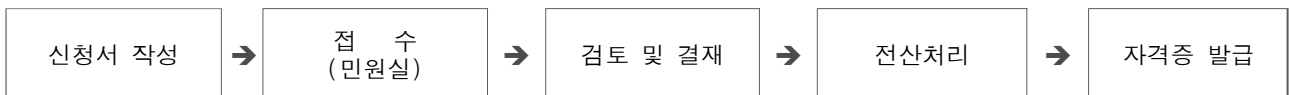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정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주민등록증사본 2. 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3. 증명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2.5cm×3cm) 1장)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검정기관(환경측정분석 담당부서)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법인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역	교육기관의 명칭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교육수수료 승인신청액 (1인 기준)	
	변경사항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지정,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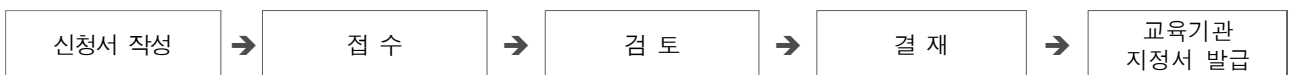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3.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계획서 1부 4. 강의실·실습시설 및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1부 ※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수료증을 조작하는 등 교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교육기관지정 담당부서)

지정번호 제 호

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서

1. 교육기관의 명칭
2. 교육기관의 소재지
3. 교육수수료 승인액
4. 교육기관의 개설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기관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내역	검정기관의 명칭		
	검정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검정수수료 승인신청액		
	변경사항 (※변경신청 시에만 기재)	변경 전	변경 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지정사항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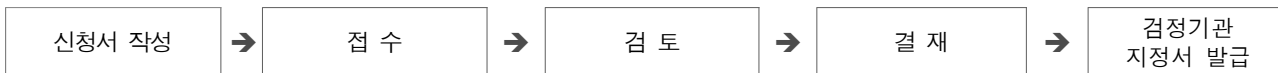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검정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검정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3. 검정과정 편성 및 검정요원 확보 현황 또는 계획서 4. 검정시설 및 설비 현황 또는 계획서 1부 ※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환경부(검정기관지정 담당부서)

지정번호 : 제 호

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서

1. 검정기관의 명칭
2. 검정기관의 소재지
3. 검정수수료 승인액
4. 검정기관의 개설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앞쪽)

제 호
출입·검사증
사 진 3cm × 4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기 관 명

60mm×90mm[보존용지(1종) 120g/m²]

(색상: 연하늘색)

(뒤쪽)

출입·검사증
소속/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유효기간:부터까 지 출입목적: 출입지역: 위 사람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 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라 사무실·사 업장 등에 출입·검사하거나 측정기기를 수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